

칼빈의 교직제도에 비추어 본 한국장로교회
(예장통합)의 교직제도 연구

지도 임희국 교수

이 논문을 신학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김 영 순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역사신학 전공

2005 년 1 월

김 영순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 심: 임 회 국 교수 _____ 인

부 심: 서 원 모 교수 _____ 인

부 심: 박 경 수 교수 _____ 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감사의 글

먼저 본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신 승언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본 논문 작성에 있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도해 주시고 용기와 격려와 희망을 주신 임희국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제가 있기까지 기도로 성원해 주신 어머니와 형제들, 쟁기회원, 엘라이온 기도팀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곁에서 묵묵히 내조해준 아내와 진희, 지연, 진우에게, 그리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05 년 1 월 6 일

김 영 순

목 차

I. 서론	1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B. 연구방법 및 범위	3
II.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교직제도	4
A. 말씀선포와 성례전	6
B. 교직제도	11
1. 목사	16
2. 교사	17
3. 장로	20
4. 집사	22
C. 권위문제	24
1. 교리에 관한 권위	26
2. 입법권	27
3. 재판권	28
III.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나타난 교직제도	32
A. 헌법 초안부터 완성까지	32
B. 항존직	34
1. 목사	35
2. 장로	39
3. 집사	41
C. 임시직	43
1. 전도사	44
2. 서리집사	45

D. 여성교직제도	46
1. 여성 치리권 청원	46
2. 권사	51
E. 목사 후보생	54
F. 폐지된 교직제도	54
1. 조사와 영수	55
2. 강도사	56
3. 전도인	56
IV. 한국장로교회(예장통합)에 적용된 칼빈의 교직제도	59
A. 한국장로교회에 적용된 교직제도	59
B. 한국장로교회의 자생적 교직제도	65
V. 결론	68
A. 요약	68
B. 제언	71
□참고문헌	74

I. 서론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1509년 7월 10일 프랑스의 노용(Noyon)에서 출생하였으며, 1536년 제네바에서 목회를 시작한 이후 약 3년간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서 목회한 것을 제외하면 제네바 교회의 목회자로 평생을 살았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서, 목회를 자신의 일생의 과제로 삼았고, 오로지 교회를 위해 봉사한 인물이다.¹⁾ 칼빈은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양육을 위해 제공한 어머니와 같은 지상적 수단,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듯이 하나의 교회, 그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는 그리스도의 몸, 선택된 백성의 모임으로서 그 본질을 규정하고 있다.²⁾ 그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일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주장한다. 당시 중세기 서유럽 전체는 교황중심주의가 되어 영적인 지도자로서 군림함과 동시에 정치적 군주와 다를 바 없는 행세를 함으로써 영적인 면에서 여러 모로 손상을 입고 있었다.³⁾

그래서 그는 성서에 근거한 초대 교회의 모범을 따라 교회를 개혁하였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3중직분에 근거를 두고, 초대 교회의 모범을 따라서 교회 직제를 구성하였고, 몸의 지체들이 상호 협력함으로 몸이 살아나듯이 각각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처음부터 그에게서 교회는 인간 위에 군림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

1) 황정욱, “교회론,” 한국칼빈신학회 편, 『칼빈 신학 해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354쪽.

2) 위의 책, 365쪽.

3) 위의 책, 355쪽.

선포를 위해,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도구로서 이해되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는 몸의 각 지체들인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각자가 맡은 임무가 있다. 이러한 직분을 가진 자들은 주님의 종이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주의 교회 건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는 목사와 목사, 목사와 장로, 다른 교직자들 간에 상호 협조보다는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로마 카톨릭의 교직의 횡포로 말미암아 상실된 성서적인 교직의 의미를 회복시킨 칼빈의 『기독교강요』 제 IV권을 중심으로 그의 교직제도를 살펴보고, 아울러 한국 장로교회(예장통합)의 헌법에 나타난 교직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 장로교회의 교직제도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칼빈의 교직을 오늘 한국 장로교회의 현실에 맞게 재해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B.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칼빈의 『기독교강요』 제 IV권을 중심으로 칼빈의 교직제도가 어떻게 그의 목회 현장에서 적용되었는가, 장로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오늘날 한국장로교회의 교직제도를 살펴보고, 칼빈의 교직제도가 한국장로교회에 적용된 부분과 한국장로교회의 자생적 교직제도를 검토하고 올바른 교직을 전망해보고 결론을 삼으려고 한다.

먼저 제II장에서는 칼빈의 『기독교강요』 제 IV권에서 다루고 있는 교회의 표지인 말씀선포와 성례전, 그의 목회 현장에서 사용되어진 교직제도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권위의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제III장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교회 헌법의 초안에서 현재의 헌법이 이루어지기까지를 살펴볼 것이며, 대한예수교장로교회 헌법에 나타난 교직제도를 살펴보고, 한국장로교회 초기부터 줄기차게 이어져 오던 여성치리권 청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초기 한국장로교회에 있다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폐지된 교직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제IV장에서는 칼빈의 『기독교강요』에서 주장한 교직제도가 오늘날 한국장로교회의 교직제도로 정착된 부분과 한국적인 상황과 현대적 사회의 흐름에 따른 한국장로교회의 자생적 교직제도를 살펴볼 것이다. 제V장 결론에서는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한국장로교회의 올바른 교직 제도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자료로서는 칼빈의 『기독교강요』 최종판(1559년)으로 베틀즈(Ford Lewis Battles)의 영역본(1960)과 한국어판은 생명의말씀사에서 발행한 『基督教綱要』下를 중심으로 이용하였다. 한국 장로교회의 교직제도에 대해서는 한국장로교출판사에서 발행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2003)을 일차자료로 삼고, 이 주제와 관련된 서적들을 참고하였다.

II. 칼빈의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교직제도

칼빈은 『기독교강요』 제 IV권 서두에서 교회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는 그가 가져오신 구원과 영원한 부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생기게 하고 증대시키며 그 목표에 이르게 하려면 무지하고 게으른 우리들에게는 외적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조수단도 첨가하셨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가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이 보물을 교회에 맡기셨다. ...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이는 그들이 유아와 어린 아이 시절에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 양육되도록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성인이 되고 드디어는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활동에 있어서 성부는 구원을 주도해 가고, 성자는 구원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며, 성령은 그 질료를 개인에게 전달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무지와 나태와 약함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 그 구속활동을 이룬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의 능력에 맞춘다.” 이것이 칼빈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명제다. 인간의 타락 때문에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그래서 그 파괴된 창조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다. 칼빈은 이 교회를 우리의 어머니⁵⁾라고 부른다.

4)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IV. 김종흡 외 3인 공역, 『基督教綱要』下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2) 다음부터 『기독교 강요』는 *Inst*로 약한다.

5)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1), 173-74쪽.

중세 교회는 교황 그레고리 1세 이후 여러 측면에서 교회의 본질로부터 빗나갔다. 교황을 피라미드의 꼭지점으로 하는 계층질서적 사제체제는 서품성사에 의하여 받은 사도적 권위와 권한에 의하여 7성례전(은총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평신도에게 매개하였으니, 이 같은 교황주의 성직체제가 교회의 본질을 구축하였다. 역사적 연속성에 따른 교황들의 사도적 계승(apostolic succession)이 교회의 본질을 이룬다는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칼빈은 교회의 기초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이다. 우리가 교회의 연합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연합된 교회에 확실한 접붙임을 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선택받은 무리를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머리가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모든 다른 지체들과 연합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장차 기업을 받으리라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 모든 선택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으므로 한 머리에 의존하며 한 몸에 달린 지체들같이 서로 단단히 결합된다. 그들이 참으로 하나 되는 것은 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똑 같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함께 살기 때문이다.⁶⁾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 제 IV권에서 성령의 말씀사역에 의해 주어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무지와 나태함 때문에 교회 교역을 필요로 하는 것⁷⁾이라고 말한다. 칼빈의 교회론은 은혜의 ‘외적 수단’이었다. 따라서 직제 역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초대하고, 그 연합을 계속 누리도록 하시는 ‘외적 수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칼빈은 성령에 의한 말씀 사역을 돕는 직제론을 말하고 있다.

6) *Inst.* IV. i. 2.

7) 이종성, 『교회론』Ⅱ(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9), 122-23쪽.

A. 말씀선포와 성례전

칼빈은 『기독교강요』 제 IV권에서 참된 교회의 표지로 말씀 선포와 성례전의 집행을 강조한다. 그는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의 표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를 지킬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이다.(엡 2:20) 한 단체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고 있다면 교회라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⁸⁾고 말한다. 하나님은 교회의 봉사와 수고에 의해서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기를 원하셨고, 영적 양식과 구원에 유익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스스로 한 가족의 아버지이심을 보이려고 하셨다.⁹⁾ 그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이다. 또한 계시된 성경 말씀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증거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전달하라고 하는 공식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위임받은 공동체이다. 말씀이 중심이며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증거가 담겨 있는 성경을 중시한다. 교회의 최우선적인 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달하는 것이다.¹⁰⁾

칼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봉사를 위하여 그리스도 자신에 의하여 정해져 있으며, 교회의 봉사는 말씀의 설교와 성례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현존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8) *Inst.* IV. i. 9.

9) *Inst.* IV. i. 10.

10) 총회헌법개정위원회 신앙고백과교리분과위원회 편, 『21세기 한국장로교회의 신앙과 신학의 방향』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169쪽.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 4:12)라는 바울의 서신을 주시한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순간에 그의 백성을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지만 그들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¹¹⁾

하나님은 목사와 교사를 임명하여 그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가르치게 하였고, 그들에게 권위를 주었으며, 거룩한 신앙의 일치와 올바른 질서에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든 생략하였다. 무엇보다도 그는 성례전을 제정하여, 그것을 경험한 우리는 신앙을 촉진시키고 강화시키는데 매우 유익한 보조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¹²⁾ 결국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였고, 인간을 교회에 속하도록 하였다.¹³⁾ 그러므로 말씀과 성례전을 통하여 양육되고 성장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담당해야 한다. 즉 하늘 교리를 전파하라고 목자들에게 명령하셨다.¹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결합해서 상호간에 사랑을 보다 바르게 양육하는 끈이 있다. 그것은 곧 한 사람이 목사로 임명되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며, 제자가 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한 입에서 공통된 교훈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말기시키고 그들의 손을 거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셨다.¹⁵⁾

복음 곧 말씀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의 선포이다. 칼빈은 그 복음의 선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서는 아무 도움이나 연장이 없이

11) *Inst.* IV. i. 5.

12) *Inst.* IV. i. 1.

13) *Inst.* IV. i. 5.

14) *Inst.* IV. i. 1.

15) *Inst.* IV. i. 1.

도 사업을 친히 하시거나 천사들을 시켜서 하실 수 있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 일 하시는 편을 택하신다.”¹⁶⁾ 이러한 수단으로 우선 우리에게 대한 관심을 표명하신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할 때 인간을 통해 말씀한다고 한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공개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도구로 사용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는가? 칼빈은 그 이유들을 첫째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사신으로 사용한 것은 우리에게 대한 존중(dignatio)을 선포한 것이다. 둘째로 우리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듣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이 유대 속에 있을 때 상호 사랑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¹⁷⁾ 하나님은 성서기자들을 통해 인간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사람들을 세워 그 말씀을 가르치게 하였다.¹⁸⁾

설교는 하나님의 은총을 전달하는 도구이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도구로 지정하였고, 그래서 칼빈은 가장이 자녀를 양육하듯이 주님은 참되고 신실한 교사들에 의해 영적 양식으로 우리를 양육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 직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준 최고의 직분이다.¹⁹⁾ 반면 칼빈은 이렇게 말한다.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결합된다. 이는 성령의 힘에 의해 생명이 불어 넣어지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무용하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나 성령이 설교에 매여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우리는 이 칼빈의 입장에서라도 중심적인 것과 주변적인 것의 관계

16) *Inst.* IV. i. 1.

17) *Inst.* IV. i. 5.

18)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94-95쪽.

19) 위의 책, 96쪽.

를 볼 수 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그 설교에서 성령의 역사라는 중심이 빠지면 단순히 인간의 말에 지나지 않는다. 설교는 성령이 역사할 때에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²⁰⁾ 칼빈은 성례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성례는 우리의 약한 믿음을 받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의 선하신 뜻의 약속을 우리의 양심에 인 치시는 외형적인 표이고, 우리 편에서는 그 표에 의해서 주와 주의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주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확인하는 것이다.²¹⁾

더 간단히 정의하면 성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외형적인 표로 확인하는 증거이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²⁾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기보다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하다²³⁾고 말한다. 성례는 문서에 찍은 인장과 같은 가장 분명한 약속을 한다.²⁴⁾ 칼빈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성례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새로운 성례를 정하는 것은 인간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일²⁵⁾이라고 주장한다.

말씀과 성례는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선의를 우리 눈앞에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한다. 성령께서는 외적인 말씀과 성례를 우리의 귀부터 영혼에 전달한다.²⁶⁾ 성례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견고성

20) 위의 책, 97-98쪽.

21) *Inst.* IV. x iv. 1.

22) *Inst.* IV. x iv. 1.

23) *Inst.* IV. x iv. 3.

24) *Inst.* IV. x iv. 5.

25) *Inst.* IV. x viii. 19.

26) *Inst.* IV. x iv. 10.

을 지니며 그를 떠나서는 성례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다.²⁷⁾ 칼빈은 한편으로는 성례가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성례는 신앙 안에서 받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아니다²⁸⁾고 말한다. 그래서 성례와 신앙은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칼빈은 신앙이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고유한 일이라고 인정한다.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자비의 보고를 알게 되고 성령의 광명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 아무것도 볼 수 없으며 감각이 둔해서 영적인 것을 전혀 느낄 수 없다. 첫째, 주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지시하신다. 둘째, 말씀을 성례로 확인하신다. 끝으로 우리의 지성을 성령의 빛으로 비추시며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말씀과 성례가 들어오게 하신다.²⁹⁾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말씀과 성례는 귀를 울리고 눈앞에 나타날 뿐이며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는 들리는 성찬이요 주의 만찬은 보이는 성찬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³⁰⁾

칼빈의 교회관은 철저하게 성서적이며 기독교적이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당시 로마 카톨릭교회의 교리와 현상을 비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 개혁교회의 진면목을 사상적으로 정리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것을 구현하려고 노력하였다. 그의 교회 이해는 오늘의 개혁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세계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넓은 차원에서의 새로운 평가가 요청되고 있다. 칼빈은 교회를 어떤 틀에 박힌 고정관념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위로는 말씀과 그리스도의 요구에 순응해야 하고 아래로는 그때그때의 인간 상황에서의 복음의 관련성을 강조하

27) *Inst.* IV. x iv. 16.

28) *Inst.* IV. x iv. 17.

29) *Inst.* IV. x iv. 8.

30) T. H. L. Park, *John Calvin*, 김지찬 역,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0), 195쪽.

였다. 교회는 항상 성령과 말씀의 역사 속에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칼빈은 교회의 사명을 교회의 대내적인 관심사에만 국한하지 않았다. 선택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는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칼빈은 교회를 성직자 중심의 공동체로 생각하지 않았다. 말씀을 위탁받은 목사의 직책을 강조하면서도 교회는 전체 신도가 사도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칼빈에 있어서 교회의 목회는 말씀과 성례의 두 개의 동심원을 최대한으로 일치시키려는 노력이다. 말씀과 성례를 통해 아직 참으로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지도록 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며, 권징을 통해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칼빈에 의하면 교리들 가운데 중심적인 것이 있고 주변적인 것이 있다. 그런 중심적인 것이 부정되면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³¹⁾ 칼빈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는 곳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교역 가운데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집행은 특별히 중요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B. 칼빈의 교직제도

본래 교직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사역으로서 홀로 행하시던 직분인 선지자의 직분과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이다. 그런데 교회가 지상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믿도록 하는 일과, 교회와 더불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에 동참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의 마지막까지 교회를 확장시키는 일이었다.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는 실무자가 필요하며 최소한의 조직이 필요했다. 그 필요성에 따라 원시교회는

31)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177-80쪽.

원초적인 교직제도(敎職制度)를 두어 그들의 봉사활동으로 날로 성장해 갔다.

칼빈은 말씀과 성례와 권징은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기본적인 요소가 말씀과 성례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성례를 올바르게 행하며, 그리고 올바르게 권징이 시행될 때 직분은 이 세상에서 교회의 존재를 위하여 그 역할을 다한다는 것이다.³²⁾ 칼빈은 교회를 위한 성직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직책을 목회자들에게 위탁하시고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통해 선물을 교회에 분배하시며, 그의 이 제도 안에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써 친히 임재하신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이심으로써 그 제도가 허망한 것이나 무익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신다. 성도들의 갱신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은 이렇게 세워지며,(엡 4:12) 이렇게 우리는 범사에 머리아신 그에게까지 자라며(엡 4:15) 서로 함께 자라는 것이다.³³⁾

칼빈이 교회론의 본질을 논할 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 교회는 제도를 갖는다는 것이다. 교회의 제도란 교회에게 맡겨진 임무에 의해서 생겨진다. 개체 교회나 전체로서의 교회란 공동체 안에서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맡겨진 과제, 즉 임무에 의해서 세워진다. 교회는 위로부터 즉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의 성령과 은사를 통해서 세워진다. 올바른 교직제도가 주어지려면 모두가 지고의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교회가 그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의 공동체라는 것을 증거하며 그 안에서 각자가 받은 은

32) Otto Weber,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65쪽.

33) *Inst.* IV. iii. 2.

혜에 따라 다른 지체에 봉사해야 한다.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의 유일한 주님이요 선생으로 나타날 때에만 교회의 제도는 바르게 될 것이다.³⁴⁾ 칼빈이 1541년 제네바 교회를 위해 작성한 교회법규에서는 “우리 주님이 그의 교회의 통치를 위해 제정한 네 직임이 있다. 첫째는 목사요, 그 다음은 교사요, 그 다음은 장로요, 넷째는 집사이다”라고 말한다.³⁵⁾ 칼빈은 에베소서 4:11과 로마서 12:7-8에 근거하여 교직제도를 추론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교회 정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을 바울은 첫째로, 사도, 다음은 선지자, 셋째는 복음 전하는 자, 넷째는 목사, 끝으로 교사라고 부른다.(엡 4:11) 이 중에서 끝에 있는 둘만이 교회 내의 평상직이요, 처음 셋은 주께서 그의 나라의 초창기에 세우셨고 필요에 따라 가끔 부활시키신다.³⁶⁾

칼빈은 교직을 내세움에 있어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중심의 계층 질서에 반대하고 신약 성서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유형에서 모델을 찾았다. 그러나 칼빈은 초대교회를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않는다.³⁷⁾ 칼빈은 사도 시대의 교회에만 있었던 직원을 비상직원(일시적인 직임)이라 한다. 비상직원은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등이다. 이 직원들은 교회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직분들로서 교회는 받아들였다. 일상직원(영구적인 직임)들은 목사, 교사를 가리킨다. 이들은 신약시대의 영구적인 직분들이므로 일명 항존직(恒存職)이라고도 한다.³⁸⁾ 칼빈은 하나님

34) Wil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김향안 역, 『칼빈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198-99쪽.

35)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182쪽.

36) *Inst.* IV. iii. 4.

37)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182쪽.

38) 위의 책, 51쪽.

께서는 그의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신다.³⁹⁾고 말한다. 교회의 일치(엡 4:4-7)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과 성숙한 조화를 위해서 교역자들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들이 교회를 지도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위의 열거한 교직 중 목사와 교사는 교회 안에 항존 하는 일상직이다. 이와 달리 사도직, 예언자, 전도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할 당시에 생겼으며, 훗날에 필요에 의하여 생길 수도 있는 임시직⁴⁰⁾이라고 한다. 그는 고대 교회의 복음전도자와 사도는 오늘날의 목사에 해당되고, 예언자는 교사에 해당 된다⁴¹⁾고 본다. 칼빈은 직분 그 자체를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여러 형태의 봉사와 그 직분의 역할⁴²⁾에 대해 말한다.

칼빈은 이러한 성경적 근거에서 하나님이 교회의 통치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교회의 교역이란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믿는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주된 인대”⁴³⁾라고 한다. 이는 교회 직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회의 직제는 교회의 본질 혹은 교회의 본질적 표지는 아니지만, 교회의 본질에서 나왔고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성취할 자들은 하나님의 봉사자들과 말씀의 봉사자자들이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직책”⁴⁴⁾을 맡기셨고, 이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은혜까지 주셨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 봉사자들을 통하여 “그의 선물들”을 교회에 주신다.⁴⁵⁾

39) *Inst.* IV. iii. 1.

40) *Inst.* IV. iii. 4.

41) *Inst.* IV. iii. 5.

42) Wil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김향안 역, 『칼빈의 신학』, 200쪽.

43) *Inst.* IV. iii. 2.

44) *Inst.* IV. iii. 2.

칼빈의 교회론은 직분을 중심으로 한 이해라 할 수 있다. 교직 제도는 하나님이 그의 교회를 다스리기 위한 제도라고 한다. 하나님만이 교회를 지배하며, 교회 안에서 권위와 우월한 지위를 가져야 하며, 그 권위는 그의 말씀에 의하여 행사된다고 한다.⁴⁶⁾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직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직분을 주시고 사람을 세우셔서 사람의 봉사를 통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식을 취하셨다.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키우며 목적지까지 전진시키려면 무지하고 태만한 우리들에게는 외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약점에 대비해서 필요한 보조 수단을 첨가하셨다. 그리고 복음 전파가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이 보물을 교회에 맡기셨다. 목사와 교사들을 임명하셔서(엡 4:11) 그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가르치게 하셨으며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고 끝으로 신앙의 거룩한 일치와 올바른 질서를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셨다.⁴⁷⁾

하나님께서서는 교회의 직분을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직분자를 세우시고 직분자를 통하여 일하신다. 그런데 직분은 목사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다.⁴⁸⁾ 칼빈은 네 가지 직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직, 선지자직, 및 병 고치는 은사 등과 같은 임시직도 인정한다.⁴⁹⁾ 결국 개혁교회에서 사역의 직무는 목사, 교사, 장로, 집사의 사중직무로 거의 통일이 되었으나 칼빈 자신도 이것을 율법적으로 고정시키는 것을 원치

45) Lefferts A. Loetscher, *A Brief History of the Presbyterians*, 金南植 역, 『世界長老教會史』 (서울: 성광문화사, 1983), 26쪽.

46) *Inst.* IV. iii. 1.

47) *Inst.* IV. iii. 1.

48) Otto Weber,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66쪽.

49) *Inst.* IV. iii. 4.

않았다. 사람과 개교회의 형편에 따른 융통성을 인정한 것이다.

1. 목사

칼빈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역의 직무는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을 집행하는 “목사의 직무”였다. 이것의 우위는 곧 교회의 지배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목사는 단지 성령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⁵⁰⁾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에 관해서만 말씀을 선포하는 신약 시대의 사도와 같은 역할이 목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였다. 목사에게는 설교의 직무와 성례전의 집행과 훈련의 책임이 주어졌다.⁵¹⁾ 칼빈은 목사직을 에베소서 4장 11절의 주석에서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는 직분의 형태를 말할 때 어느 특정한 시대에 필요한 직분과 시대를 초월하여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과 구별한다. 목사와 교사의 직분은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이요, 그 밖의 다른 직분들은 어떤 특정한 시대 즉 교회의 첫 구성을 위하여서만 존재한다고 말한다. 칼빈의 바울 서신 해석을 보면 사도나 선지자 또는 전도자는 항상 있는 교회의 직분이 아니라고 한다. 이러한 이해에 대한 해석학적 근거는 성경본문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의 목회생활의 필요에서 나온 것이다. 칼빈은 성서문자주의자(Biblizist)가 아니었다.⁵²⁾ 칼빈은 목사직과 사도직의 차이를 이렇게 말한다.

목사직과 사도직의 차이란 사도의 경우 목회의 대상이 온 세상이며, 목

50) Wil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김항안 역, 『칼빈의 신학』, 200쪽.

51) Otto Weber,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76쪽.

52) 위의 책, 68쪽.

사의 경우 대부분의 목사는 개교회를 맡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목사는 공적인 예배에서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권면과 훈령까지도 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치리권을 갖는다.⁵³⁾

칼빈은 성서에서 사용되는 ‘episcopus’, ‘presbyter’, ‘pastors’, ‘minister’는 동의어로 보고 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모두 ‘감독’이라고 부른다. 바울은 디도에게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라고(딤후 1:5) 명령한 직후에 디도서 1:7과 디모데전서 3:2에 보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빌립보서 1:1b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행전 20:17에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장로들을 사도행전 20:28b에서는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라고 한다.⁵⁴⁾ 그러나 내가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을 감독, 장로, 목사, 또는 사역자라고 구별 없이 부른 것은 성경이 이 말들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이다.⁵⁵⁾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수단을 통해서 인간들을 교육하신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목사를 세워야 한다.

2. 교 사

칼빈은 교회의 교직으로 목사 다음에 교사가 있다고 말한다. “교사의 고유한 교직은 신자들 사이에 건전하고 순수한 교리를 유지하려는 것이다.”⁵⁶⁾ 칼빈의 교회론에서 교사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⁵⁷⁾ 처음에는 교

53) *Inst.* IV. iii. 6.

54) *Inst.* IV. iii. 8.

55) *Inst.* IV. iii. 8.

사가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 때에는 사도, 선지자,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사는 교회의 설교를 성서에 비추어 검토하여 장차 설교자 양성을 위하여 노력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목사와 교사가 없이는 교회의 지도가 불가능하다.⁵⁸⁾ “예언자의 직임은 그들이 계시라고 하는 독특한 은사를 가지기 때문에 더욱 탁월하다. 그런데 교사들의 직임은 거의 비슷한 특징과 정확하게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⁵⁹⁾ 칼빈은 목사와 교사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치리와 성례 집행, 그리고 경고와 권면을 하는 일을 맡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는 일만 맡는다. 이는 신자들 사이에 건전하고 순수한 교리가 보존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목사의 직책은 이 모든 기능을 전부 포함한다. ⁶⁰⁾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 초판에서는 목사와 교사를 구분하였으나 최종판(1559년 판)에서는 목사, 장로, 집사로 구분하고, 교사의 직분을 목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칼빈은 목사직과 교사직을 이렇게 구별하긴 하지만 때로는 이 두 직을 함께 묶어 교회의 네 교직 대신에 세 교직을 말하기도 한다.⁶¹⁾ 칼빈도 실제로 목사와 교사로 불리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그것은 “목사의 교육과 온 교회의 교훈을 맡은 또 다른 부류의 스승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엡 4:11)이었다. 이 두 직분을 하나로 묶으

56) *Inst.* IV. iii. 4.

57)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185쪽.

58) Wil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김향안 역, 『칼빈의 신학』, 199-200쪽.

59) *Inst.* IV. iii. 5.

60) *Inst.* IV. iii. 4.

61) *Inst.* IV. iv. 1.

려는 성향이 칼빈에게서 여실히 잘 드러나고 있다. 칼빈은 강당과 학문적 직책을 동일하게 맡았다. 그는 이 두 직분을 통해서, 그러나 주로 교사로써 활자 매체를 통해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⁶²⁾ 칼빈은 에베소서 4:11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는 하나의 직책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구절의 다른 부분들과 달리 그들을 구별하는 접속사가 없기 때문이다. 크리소스톰과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견해를 가졌다. 나는 이를 부분적으로 그들에게 동의한다. 즉 바울도 목사들과 교사들이 마치 동일한 직책인양 구별 없이 말한다. 또한 나는 교사라는 명칭이 어느 정도 모든 목사들에게 속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가르치는 것은 목사들의 임무이다. 그러나 성서를 해석하는 특수한 은사가 있어야 건전한 교리가 유지될 것이며, 그리고 설교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⁶³⁾

칼빈은 교사의 교직을 중시함과 함께 교회의 교육적 기능을 강조한다. 그는 제네바 교회의 교리문답 서문에서 교회는 항상 아동들을 기독교 교리 안에서 바르게 교육하는 일을 힘써 행해 왔으나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을 전복시켰다고 비판하고 교회교육의 회복을 강조한다.⁶⁴⁾ 칼빈에 의하면 교회에서의 교사 직분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고 한다. 하나님은 복음 전도가 만연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에 이 보물을 맡겼으며, 그 직무를 목사와 교사에게 임명하여 그들의 입을 통해 자기의 백성을 가르치게 했다. 그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교회 교육을 통하여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며, 모든 사람이 온유하고 배우겠다는 정신으로 교사의

62) Donald K. Mckim, *Reading in Calvin's Theology*, 이종태 역, 『칼빈신학의 이해』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1), 10쪽.

63) Calvin's Commentaries. on Eph 4:11 (1548).

64)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187쪽.

지배를 받게 하였다고 한다.⁶⁵⁾ 신자의 유일한 교사이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사람에게 맡겨 배우게 하시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⁶⁶⁾ 칼빈의 체계에 있어서 교사는 성서를 가르치는 일을 전담하는 교직이요, 목사는 교사의 직무를 포함하여 다른 직무까지 행하는 직분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3. 장로

칼빈은 교회의 교직 가운데 세 번째로 “장로의 직무”를 들고 있다. 칼빈은 성서에서 나오는 감독, 장로, 목사라는 말들을 상호 교환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⁶⁷⁾ 칼빈은 장로의 직무에 관해서는 목사의 직무처럼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교인들의 신앙 훈련을 위해서 목사 혼자로서는 어렵고 이 일을 떠맡은 사람이 필요한 것을 의식하고 적절한 직분을 모색하였다. 우선 성서에 사용된 용어로서도 장로(presbyteros)가 감독(episkopos), 사제(priest)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서 사용된 곳이 많기 때문에 목사와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보다도 칼빈이 겪은 어려움은 실제적인 것이었다. 칼빈은 1537년 교회를 돕고 제네바시에 있는 작은 교회들의 기강 유지와 신도의 훈련을 위해서 유능한 사람들을 선정해 달라고 시당국에 요청하였다. 이런 요청을 함에 있어서, 칼빈은 그 때까지 감독과 교황에게 속한 치리의 권한을 행정관서에 다소 이양한 셈이 된다. 그래서 정치가 장로선정 권한을 행사하여 교회문제까지 관여하기 시작하자 교회개혁에 어려움이 부딪치게 되었다. 칼빈은 다시 한번

65) *Inst.* IV. i. 5.

66) *Inst.* IV. iii. 3.

67)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188쪽.

교회와 국가의 분리 원칙을 주장했으나 장로라는 직책은 이런 상황에서 태동하게 되었다.⁶⁸⁾

칼빈은 로마서 12:7-8과 고린도전서12:28에 근거해서 “다스리는 일”과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만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직무이며, “능력”, “치유”, “방언” 등은 이미 없어졌다고 하면서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나는 다스리는 사람들은 신자들 사이에서 선택된 장로들이었으며, 감독들과 함께 도덕적 견책과 권징을 시행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⁶⁹⁾고 파악하였다. 여기에서 칼빈은 두 가지 형태의 직분, 즉 다스리는 일과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은 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⁷⁰⁾ 이 두 직분은 바로 장로와 집사를 가리킨다. 그런데 칼빈은 이 장로가 설교권을 가진 장로와 동일시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장로(presbyteri)란 말이 감독(episcopoi)과 목사(pastores, ministeri)와 함께 나란히 쓰여 있는 대목에서 다스리는 자의 임무는 이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시사한다. 이것을 보아 장로는 설교하는 직책이 아니라는 것을 쉽사리 알 수 있다. 장로들은 교회를 이끌며 권징을 행한다. 그러므로 장로는 감독과 같은 것이다.⁷¹⁾

칼빈은 장로직을 성서 및 고대교회에 있었던 직분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말씀을 가르치는 교직자 장로와는 구별되는 평신도 가운데 선출된 직분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성서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장로라는 말을 목사와 장로 둘 다 지칭하는 말로 해석했지만 당시의 교회 조직에 대해서 말할 때는 장로라는 말을 장로에 대해서 국한시켜 사용하였

68) 박근원, “칼빈의 교회론,” 한국신학대학 출판부 편, 『칼빈 神學의 現代的 理解』 (서울: 한국신학대학, 1978), 178-79쪽.

69) *Inst.* IV. iii. 8.

70) *Inst.* IV. iii. 8.

71) Otto Weber,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74쪽.

고, 목사에게 대해서는 장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⁷²⁾ 칼빈은 초대교회 때부터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에는 재판권을 행사했던 장로회(Senatus)가 있었으며, 또한 경험에 비추어 보아 이러한 장로회는 계속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장로와 집사는 교인의 공동체와 관계가 있는 직분이다. 칼빈은 말씀을 생각할 때면 언제나 교회를 동시에 염두에 두었다. 말씀과 교인의 공동체와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그 관계는 마치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 있는 것과 같은 관계이다. 칼빈은 직분을 유기적으로 이해했다. 따라서 교회의 직분은 서로 견제를 받으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다.⁷³⁾ 교회의 직분은 실상 하나인데 그 직무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교회의 직분은 직무에 있어서 여러 가지이지만 봉사한다는 입장에서는 동일하다. 즉 일치 속에 다양성이 그리고 다양성 속에 일치가 있다는 말이다.

4. 집사

칼빈은 네 번째 교직으로서 “집사의 직무”를 들고 있다. 신약은 장로 외에도 집사(diakonia) 대해 말하고 있다.(빌 1:1; 딤후 3:8, 10, 12) 일반적인 견해에 의하면 사도행전 6장 1-6절은 집사직을 기록하고 있다.⁷⁴⁾ 고대 교회에는 항상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불우한 자들을 위한 물질을 받아 나누어 주고 보관했는데, 매일 구제금뿐만 아니라 재산세, 연금 등도 맡았다. 다른 하나는 병자들을 보살피고 간호하며 불우한 자들

72)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189쪽.

73) Otto Weber,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74-5쪽.

74)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신복윤 역, 『교회론』 (서울: 성광문화사, 1989), 70쪽.

을 위한 구제품을 관리했다.⁷⁵⁾ 칼빈은 로마서 12장 8절에서 집사의 두 직무를 추론해 낸다.⁷⁶⁾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공활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롬 12:8)고 두 가지 종류에 관해 언급하였다. 따라서 집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구제 사업을 관리하는 집사들과 직접 빈민들을 돌보는 집사들이다. 디아코니아(섬기는 일: 집사직)라는 말에는 더 넓은 뜻이 있지만, 성경에서 집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교회가 구제 물자를 분배하며 빈민을 돌보는 빈민 구제금을 관리하는 일을 맡긴 사람들이다. 그들의 기원과 임명과 직분에 대해서는 누가 사도행전에 기록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은 매일 구제에서 제외된다는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사도들은 자기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공제를 함께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직한 사람 일곱 명을 선택해서 이 일을 맡기라고 신자들에게 부탁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교회에는 이런 종류의 집사들이 있었고 우리도 그것을 본받는 것이 마땅하다.⁷⁷⁾

칼빈 당시의 집사직은 사도 시대와 성격이 같았다.⁷⁸⁾ 그들은 매일 신자들이 바치는 예물과 매년 교회에 들어오는 수입을 받아들여서 적당하게 쓰는 일을 맡았다. 즉 감독이 결정한 대로 사역자들은 빈민들의 생활비로 지불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매년 그 분배 상황을 감독에게 보고했다. 교회법이 어디서나 감독을 교회의 모든 재산의 관리인으로 지정했다는 사실은 감독이 직접 그 일을 처리했다는 것이 아니다. 교회에서 공적 원조를 받을 사람들은 집사에게 지정하며 남는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얼마씩 주라고 지시하는 것이 감독의 책임이었다. 그는 집사가 임무를 충

75)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189쪽.

76) *Inst.* IV. iii. 9.

77) *Inst.* IV. iii. 9.

78) *Inst.* IV. iii. 6.

실히 수행하는지를 조사해야 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정했다고 하는 교회법에 이런 말이 있다.

우리는 감독에게 교회의 일을 관할하는 권한이 있다고 선포한다. 사람들의 영혼이 감독에게 위탁되었다면 그가 재산관리에 관계하는 것은 더욱 적합하다. 그의 권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장로들과 집사들을 통하여 빈민에게 분배되며, 두려움과 상당한 주의로 처리되어야 한다.⁷⁹⁾

칼빈은 로마교회가 집사를 예배 의식과의 관계에서 봉사하도록 한 전통을 파기하고 성서가 말하는 집사 본연의 직무를 강조하였다. 그는 집사를 두 종류로 구분하여, 한 종류는 주로 헌금을 취급하였고, 다른 종류의 집사들은 주로 가난한 자와 병자를 돌보도록 하였다. 여자 집사들이 주로 후진에 속하였다. 워커(Walker)는 이처럼 칼빈이 초대 교회의 집사직을 부활시킨 것을 그의 위대한 승리로 보았다. 중세기 동안에 집사는 예배의식의 보조자에 불과했지만 칼빈에 의해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게 되었다⁸⁰⁾는 것이다.

C. 권위문제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 IV권, 제8장에서 제12장까지 교회의 권위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의 권위는 독자적인 권위가 아니라 성서에 의존한 권위라는 점이다.⁸¹⁾

79) *Inst.* IV. iv. 5.

80) Walker G. S. M, *Calvin and Church: Reading in Calvin's Theolog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4), p. 387. 재인용: Donald K. Mckim, *Reading in Calvin's Theology*, 이종태 역, 『칼빈 신학의 이해』, 299쪽.

그러므로 교회의 권한은 무한한 것이 아니며 주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⁸²⁾ 교회의 권한이 그 일부는 개개인의 감독들에게 속하고, 다른 일부는 지방 회의에 또는 총회의에 속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 권위이며 이것이 교회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한이다. 그리고 이 권한은 교리에 관한 권한과 재판권 그리고 입법에 관한 권한으로 나뉜다.⁸³⁾ 여기서 칼빈은 교회의 권한을 주신 목적에 대해 거듭 강조하는 것은 권세를 주신 것은 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을 인용한다.(고후 10:8, 13:10)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은 사역자들이 그리스도께서 그 권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⁸⁴⁾

칼빈은 직분을 주신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경에서 성령의 권위와 위엄을 제사장이나 예언자나 사도들의 사도나 후계자들에게 주실 때에 개인에게 주시지 않고 그들이 임명되는 그 직분에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기억해야 한다.”⁸⁵⁾ 즉 그들이 선포하도록 위탁을 받은 그 말씀에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교직자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라고 할 수 있다. 교회의 권위와 성서의 권위 관계의 문제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종교개혁자들 사이에 있었던 가장 큰 쟁점이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서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 위에 뒀으로써 성서적 근거에서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다. 칼빈은 성서의 권위를 최우위에 두었으며 감독이나 지방교회회의나 세계교회회의의 결정은 성서에 일치할 때만 권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요컨대 교회의 권위를 성서의 권위에 종속시켰다.⁸⁶⁾ 교회의 권위는 엄격히 정의하면

81)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192쪽.

82) *Inst.* IV. viii. 4.

83) *Inst.* IV. viii. 1.

84) *Inst.* IV. viii. 1.

85) *Inst.* IV. viii. 2.

86)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193쪽.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다. 교회가 최고의 권위는 가지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대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일 때 만이다. 교회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다. 교회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교회의 권위는 교회가 선포하는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에 놓여 있다. 교회의 권위는 교회가 선언하는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에 놓여 있다. 칼빈의 교회의 직무에 관한 개념의 전체적인 윤곽에 활력을 불어넣는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서 교회는 그 말씀을 전할 대상자들의 종이라는 개념이다.⁸⁷⁾ 결국 그리스도의 대변자인 교회는 영적인 영역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것이다.

1. 교리에 관한 권위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 교회의 권위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즉 신조를 제정하는 권한과 신조를 설명하는 권한이다.⁸⁸⁾ 교회가 가르치는 것과 명령하는 것에 감히 반대하는 자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마 18:17)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교리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다만 교회가 견책으로 죄악을 시정하는 권위를 주장하며 충고와 책망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의 판단에 항거하지 말라고 하실 뿐이다. 교회는 주의 말씀에 계시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며 주장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⁸⁹⁾

칼빈은 하나님께서 주신 교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 이외의 일을

87) T. H. L. Park, *John Calvin*, 김지찬 역,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132-33쪽.

88) *Inst.* IV. viii. 1.

89) *Inst.* IV. viii. 15.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실한 사역자들은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복종하도록 하신 그 교리를 단단히 붙잡아야 할 뿐이라고 가르친다. 이와 같이 그는 아무도 남겨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에 굴복시켰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서 새로운 교리를 제창할 능력을 박탈하시는데 이는 거짓말이나 속이는 말을 하실 수 없는 진실하신 하나님만이(롬 3:4) 영적 교리에 있어서 우리의 선생이 되고자 하신 것이다. 이 법칙은 개개의 신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⁹⁰⁾ 그래서 세계적 총회라도 성서의 권위에 의존해 있다. 칼빈은 세계적 총회들 가운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케돈 총회 등은 성경에 대한 순수하고 진지한 해석이 있었을 뿐이며 거룩한 교부들은 당시에 있던 신앙의 원수들을 쳐부수기 위해서 영적인 지혜로 이 해석을 적용했기 때문⁹¹⁾이라고 주장한다. 회의들의 표준은 하나이다. 즉 성경에 의해서 어느 쪽 교령이 정통적이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가부를 구분하는 확실한 원칙이었다.⁹²⁾

2. 입법권

교회의 두 번째 권위는 입법권이다. 칼빈은 교회법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인간 사회는 공공의 평화촉진과 화합의 유지를 위해서 어떤 형태로

90) *Inst.* IV. viii. 9.

91) *Inst.* IV. ix. 8.

92) *Inst.* IV. ix. 9.

든 조직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거래에는 언제든지 어떤 절차가 있으며 공공 생활의 예절을 위해서도 그 절차가 필요하다. 이 점은 특히 교회에서 준수되어야 한다. 모든 일이 정연한 법아래 있을 때에 교회는 가장 잘 유지되며 화합이 없으면 천연 교회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서 경계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규정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따라서 여러 가지 가책으로 양심을 속박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⁹³⁾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위험성이 있다고 말한다. 한 편으로는 거짓 주교들이 이것을 구실로 삼아서 자기들의 불경하고 독재적인 법을 변명하려 하며, 다른 편으로는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이 위에서 말한 폐단을 듣고 거룩한 법이 있을 여지를 일체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하나님의 권위를 근거로 성경에서 이끌어낸 법들 곧 인간이 만들기는 했으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 즉 성서에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⁹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규정을 세우든 간에 분명히 유익하다는 것이 나타나야 하고 수효를 아주 제한해야 한다.⁹⁵⁾ 여기서 칼빈은 입법에 있어서 사랑의 원리를 강조한다. “무엇이 해가 되고 무엇이 덕이 되는지는 사랑이 가장 잘 판단할 것이다. 사랑을 인도자로 삼으면 모든 일이 안전할 것이다.”⁹⁶⁾ 우리가 여기서 영원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규정의 운용과 목적을 전적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두게 될 것이다.⁹⁷⁾

93) *Inst.* IV. x. 27.

94) *Inst.* IV. x. 30.

95) *Inst.* IV. x. 32.

96) *Inst.* IV. x. 30.

97) *Inst.* IV. x. 32.

3. 재판권

질서 정연한 교회 상태에서는 가장 중요한, 교회 권한의 셋째 부분이 바로 재판권이다. 그런데 교회의 재판권은 전적으로 도덕적 권징에 관한 것이다.⁹⁸⁾ 칼빈은 도시에 집권자와 정치 제도가 없으면 그 도시가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도 영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재판권은 그 영적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형성된 질서에 불과하다.⁹⁹⁾ 이 목적을 위하여 처음부터 교회에 재판소를 설치하고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견책하고 죄악을 조사하며 열쇠의 직책을 다하게 했다.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다스리는 직분을 언급한 것은(고전 12:28) 이 제도를 지적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로마서에서도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롬 12:8)라고 했다.¹⁰⁰⁾ 복음의 교리는 사도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며 땅에서 난 음성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음성이라는 것을 틀림없이 확증할 필요가 있었다.¹⁰¹⁾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고 그의 말씀에 주셨으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꾼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¹⁰²⁾

여기서 칼빈은 국가의 재판권과 교회의 재판권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¹⁰³⁾ 이 모든 일은 임시적인 것이었고 집권자들이 우리의 종교를 믿지 않았을 때에만 통용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생각은 잘못된데 그들은 교회의 권한과 국가의 권한이 서로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지

98) *Inst.* IV. xi. 1.

99) *Inst.* IV. xi. 1.

100) *Inst.* IV. xi. 1.

101) *Inst.* IV. xi. 1.

102) *Inst.* IV. xi. 1.

103) *Inst.* IV. xi. 3.

못하기 때문이다. 교회에는 벌을 주며 강요하는 칼의 권세 즉 강제력이 없다. 문제는 죄인의 의사를 무시하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자신을 스스로 징계하여 회개를 표명하게 하는 것이다.¹⁰⁴⁾ 교회 재판권의 목적은 죄악을 막으며 발생한 불상사를 제거하는 것이다. 재판권을 행사할 때에 고려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즉 이 영적 권한은 첫째, 칼의 권세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며, 둘째,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닌 합법적인 회의의 결정에 의해서 행사되어야 한다. 교회가 비교적 순수했을 때에는 이 두 가지 점을 모두 준수했다.(고전 5:4-5) 그런데 거룩한 감독들은 권한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벌금이나 투옥이나 그 외의 국가의 벌칙을 쓰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사용했다. 이것은 합당한 일이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엄중한 벌은 출교 선고이며 이것은 불가피한 때에만 사용하였다.¹⁰⁵⁾

칼빈은 권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추악하고 부끄러운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빼앗으려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골 1:24), 교회의 가장 신성한 이름에 수치를 섞우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더럽히는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가정으로부터 추방되어야 한다. 둘째, 목적은 흔히 있는 것과 같이 악한 사람들과 항상 교체함으로써 선한 사람들이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셋째 목적은, 비루한 자기에 대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도록 만들려는 것이다.¹⁰⁶⁾

칼빈은 제네바에서 교회의 독자적인 과문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으며 마침내 목사와 장로들로 당회를 구성함으로써 그 노력이 성취되었다. 여기서 칼빈은 교회의 재판권과 국가의 재판권을 동심원적 관계로 보았음

104) *Inst.* IV. xi. 3.

105) *Inst.* IV. xi. 5.

106) *Inst.* IV. xii. 5.

이 분명하다. 칼빈 이전에 제네바에서는 교회에게 독자적인 과문권이 주어
져 있지 않았다. 교회와 정부는 원둘레가 동일한 한 원에 속해 있었다. 칼
빈은 이런 제네바에서 시민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라는 울타리를 치려고
노력했으며 교회의 독자적인 과문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¹⁰⁷⁾ 이
렇게 권징을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권징의
큰 목적은 죄인을 멸망시키는데 있지 않고 구원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107)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199쪽.

Ⅲ.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나타난 교직제도

A. 헌법 초안부터 완성까지

한국 장로교회를 다스리는 기본법으로 헌법이 있다. 헌법은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1편은 교리, 제2편은 정치, 제3편은 권징, 제4편은 예배와 예식, 부록으로 헌법 조례가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만국장로교회 헌법과 함께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헌법을 기본으로 하고, 대부분 미국 북장로교 헌법을 채택하였다. 이는 한국 장로교 헌법을 작성하던 그 시대에는 미국 북장로교의 선교사들이 주역을 담당하던 때이기 때문이다. 웨스트민스터 헌법은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1월 22일까지 무려 5년 6개월 22일간 걸쳐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회집된 Westminster Council에서 제정한 헌법이다.¹⁰⁸⁾

1907년 한국에 장로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여 전국적인 기구로 독노회(獨老會) 조직하고 장로회 신경과 정치를 임시로 채택되었고, 1909년 제3회 노회에서 신경, 정치, 노회 규칙을 채택했다가 1917년 9월 서울 승동교회에서 모인 제6회 총회에서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수정하여 정치, 권징, 조례, 예배모범을 채택하였다. 1921년 제10회 총회에서 완비한 “조선장로회 헌법”을 채택하였는데 당시에는 신경, 소요리, 정치, 권징, 예배 등 5법으로 되어 있었다. 그 후 한국장로교회의 헌법은 1934년과 1954년에 다시금 수정하였고, 교단의 분열과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 개정을 거듭하다가 1994년 제79회 총회에서는 여성 안수를 허락하고, 총회 총대수를 1천 500명으로 고정하는 안이 채택되어 이듬해인 1995년

108) 임택진, 『장로교회 정치해설』 (서울: 기독교문사, 1990), 27쪽.

5월 27일에 노회 수의 과정을 거쳐 시행되어 오다가 1997년 제82회 총회에서 21세기에 걸 맞는 헌법의 전면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헌법개정위원을 선임하여 맡기게 되었다. 1년간의 연구 끝에 우선 제 2편 정치와 제 3편 권징 개정안을 1998년 제 83회 총회에 제출하여 총회의 결의로 노회에 수의하게 되었는데 장로의 자격 1개 조항만 부결되고, 그 외 전 항목이 통과되어 1999년 제 84회 총회에서 공포 시행하게 되었다. 이후 2002년 제 86회 총회에 제1편 교리편에 제 6부를 신설하여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를 추가하고 제4편 예배와 예식을 전면 수정하는 개정안을 상정, 결의를 거쳐 노회 수의에서 가결되어 2003년 9월 12일 제87회 총회에서 공포¹⁰⁹⁾ 시행하게 되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원리 제4조에 의하면 교회의 직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께서 그의 지체되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두어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며 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원은 성경 도리를 신봉하는 자로 할 것이다.¹¹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세운다.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세 직분이 있는데 교회 안에 직원을 두어 이 세 직분을 감당케 하신다. 직원의 책임은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며 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데에 있다.

이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정치를 통해 본 직원을 살펴보고자

109)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개정위원회 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3-4쪽.

110) 위의 책, 189쪽.

한다. 한국장로교회의 정치는 직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는 교회의 향존직(恒存職)이며, 둘째는 임시직(臨時職)으로 나누고 있다. 향존직에는 장로, 집사, 권사가 포함되고, 임시직에는 전도사, 서리집사가 포함된다.

B. 향존직

교회 향존직이란 잠시라도 쉬거나 외면할 수 없는 일들이요, 항상 수행해야 할 본분인 까닭에 이를 가리켜 교회의 “향존 직무”¹¹¹⁾라고 부른다. 교회 향존 직원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안수 받는 직분이며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¹¹²⁾ 정년이라는 뜻은 직분이 있으나 시무를 하지 않는 것이다. 헌법에 이 4대 직분이 항상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이 일이 바로 교회가 잠시라도 외면할 수 없는 직무요, 또한 권세이기 때문이다. 벌코프(Louis Berkhof)가 말하는 대로 첫째, 교리권 내지 교훈권이란 목사가 지켜 수행해야 할 교회의 최대의 향존 직무요, 둘째는 치리권이니 이는 목사가 장로와 함께 지켜 수행해야 할 교회의 향존 직무요, 셋째는 봉사권이니 집사, 권사가 지켜 수행해야 할 교회의 향존 직무이다.¹¹³⁾ 선지자 직분은 지금의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의 직분으로 변모하였고, 왕의 직분은 치리 장로의 직분으로 변모되었으며 제사장의 직분은 예배하는 일을 제하고서 구제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 등 지금은 집사와 권

111) 박병진, 『교회 제직 교본』 (서울: 성광문화사, 1990), 52-53쪽.

11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개정위원회 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193쪽.

113) Berkhof Louis, *The Doctrin of the Church and the Means of Grace*, ch. iv. 3, p.83-97. 재인용: 朴炳珍, 『教會 政治通覽』 (서울: 성광문화사, 1993), 125쪽.

사의 직분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¹¹⁴⁾

헌법에 항존직이라고 해서 반드시 실무기간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실무기간의 영속은 성경이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장로교회의 항존직이란 헌법상 모두 안수 임직하는 종신직이 되게 하였다.¹¹⁵⁾ 현행 헌법상 교회 직원에 명예직원은 없고 목사가 시무를 사면할 때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 추대하는 원로목사,¹¹⁶⁾ 그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추대하는 공로목사,¹¹⁷⁾ 시무 장로가 노후에 시무를 사면할 때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 추대하는 원로 장로¹¹⁸⁾가 있을 뿐인데 언제부터인가 명예 권사, 명예 집사까지 등장하여 모든 직분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다. 한국장로교회(통합) 제64회 총회는 협동장로, 협동선교사, 협동목사, 명예권사 등의 명예직 사용을 금지하도록 결의하였다.¹¹⁹⁾ 물론 항존직으로 평생 봉사한 사람은 그 성질을 보아서는 명예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평신도나 서리집사로 봉사했어도 명예직을 주는 교회들이 있다. 이는 헌법의 규정에도 없는데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명예직을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이제 한국장로교회의 항존직을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목사

114) 임택진, 『장로교회 정치해설』, 70쪽.

115) 朴炳珍, 『教會 政治通覽』, 127쪽.

116)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개정위원회 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196쪽.

117) 위의 책.

118) 위의 책, 200쪽.

119)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80주년기념집』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2), 265쪽.

한국장로교회 헌법에서 목사의 의의¹²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영적 양식으로 양육하는 자이므로 목사라고 하며,(렘 3:13, 벧전 5:2-4)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봉사하는 의미로서 중이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권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사자이며,(고후 5:20, 엡 6:20) 신중하고 침착하게 의무를 다하고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며 믿음으로 가정과 교회를 치리하는 의미에서의 장로이며,(벧전 5:1-3)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고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교사이며,(딤후 1:9; 딤후 1:11)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자라는 의미로 전도인이며,(딤후 4:5) 하나님의 은사를 나누어 주고 그리스도의 설립한 율례를 지키고 행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이다.(눅 12:42, 고전 4:1-2)

목사직은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인간으로 전능자의 사신이며,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자이며, 믿음과 생활에 모범자야 한다. 그러나 아무나 목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장로교회 헌법에서 목사의 자격¹²¹⁾을 말하는데, 목사가 될 자는 교인의 지도자요 치리회의 회원으로 교회를 치리할 자이므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된 자여야 한다. 바울은 감독의 자격을 말하면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딤후 3:6)고 했다. 목사는 신앙의 교사이므로 신앙이 신실해야 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딤후 4:12)고 하였다. 레위인들이 30세에 성전에서 봉사했고, 예수님께서도 30세에 일을 시작하셨으니 30세 이상 된 자라야 하며, 총회직

120)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개정위원회 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194쪽.

121) 위의 책.

영 신학대학원은 교역자 양성 기관이므로 총회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경험을 가지는 것은 노회의 지도를 받고, 노회가 인정하는 자라야 한다. 단 군목과 선교목사는 예외로 하고 있다. 목사의 성직이 사람에게 멸시를 받지 않기 위해 신앙과 덕행, 품격과 지식 그리고 교수 능력과 치리 능력 등을 알아보기 위해 총회에서는 신학과 성경, 설교와 신앙 등을 실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목사는 성경을 해석하여 교리를 가르침으로 교인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자이므로 교수의 능력이 있는 자라야 한다. 목사의 행위가 복음에 합당해야 하기 때문에 범사에 존절하며 성결을 나타내는 자이어야 한다. 목사가 가정을 다스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먼저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려야 일반 교인을 지도할 수 있다. 목사는 불신 사회에서도 존경을 받는 자라야 한다. 그러나 여기의 자격은 외형적인 것뿐이요 더 중요한 것은 신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장로교회 헌법에는 목사의 직무¹²²⁾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일은 매우 귀중한 책임인 동시에 거룩한 특권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무리의 영혼을 먹이는 자로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며 가르치고 설교할 책임이 있다. 목사는 두 가지 성례(세례, 성만찬)를 집행할 특권이 있다. 목사는 교인을 축복하며 기도할 특권이 있다. 그러므로 목사는 교인들을 심방하되, 특히 가난한 자, 병든 자, 상처 받은 자와 상사를 당한 자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사가 자기에게는 아무 힘이 없고 오직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확신하고(시 62:11) 참으로 겸손하여 그 책임에 충성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격 있는 축원의 기도를 할 수 있다. 치리권은 장로와 협력하여 행사한다. 치리권은 목사의 다른 직무와 같이 목사가 독주할 수 없다. 장로도 독주할 수 없는 직무이다. 그러므로 목사와 장로의 협력은 치

122) 위의 책, 195쪽.

리권을 행사할 때의 인간의 과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질적 요건으로 목사는 다음의 세 가지 직무를 행하는 자이어야 한다. 즉 말씀 선포, 성례의 집행, 그리고 권징의 시행 등이다. 이 세 가지 직무는 교회의 3대 직무와 관련된다. 그러므로 목사는 교회의 직무 전반을 관장하는 자로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한국장로교회 헌법 정치 제5장 27조에서는 목사의 칭호¹²³⁾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목사의 칭호는 신분상의 칭호이다.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위임받은 교회에서 정년 되기까지 시무하는 목사를 말한다. 위임목사 청빙은 당회가 있는 조직교회이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장로회 정치는 평신도의 기본권을 대표하는 장로와 성직자의 성직권을 대표하는 목사가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므로 부패와 독주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조직교회를 위임목사의 필수조건으로 한 이유이다. 단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 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임시목사가 된다. 임시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지 교회에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를 말한다. 헌법에서는 시무기간을 3년¹²⁴⁾으로 정하고 있다.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를 말하는데 당회의 회원이며 노회의 회원이다. 노회회원이므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지 교회를 시무하는 임시 목사와 다른 점은 지 교회의 임시목사는 당회장이지만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이므로 당회장이 아니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산업기관 등에서 전도하는 목사를 말한다. 군대의 목사를 군목, 병원의 목사를 원목, 교도소의 목사를 형목, 경찰서의 목사를 청목으로 부르나 헌

123) 위의 책, 195-96쪽.

124) 구 헌법(1987년 판)의 1년에서 3년으로 개정.

법상의 칭호는 전도목사이다. 기관목사는 총회나 노회 및 관계기관에서 교육, 문서 등 사업에 종사하는 목사를 말한다. 관계기관이란 총회나 노회에서 위원이나 이사를 파송하는 기관이다. 학교에서 봉사하는 목사를 교목이라고 부르지만 공식 칭호는 기관목사이다. 선교목사는 다른 민족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송한 목사와 외국에 있는 동포들에게 전도하는 목사도 이 규정에 준하며 선교목사의 파송을 총회가 한다. 이 두 가지 선교목사의 같은 점은 총회에서 파송하는 것이고 다른 점은 다른 민족에게 전도하는 것과 동포에게 전도하는 것이다. 원로목사란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계속해서 시무하던 목사가 시무를 사면할 때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원로목사로 추대하는 목사를 말한다. 원로목사는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 예우는 지교회의 형편에 따라 다르다. 공로목사는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공이 있는 목사가 노회에서 시무사면 청원을 할 때, 그 공로를 기념하기 위하여 노회의 결의로 추대한 목사를 말한다. 무임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교회가 없는 목사를 말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목사의 직이 자동 해직되도록 하고 있다. 은퇴목사는 정년이 되어 퇴임한 목사를 말한다. 정년이 되지 않아도 조기 은퇴하고자 하면 허락할 수 있다.

목사 될 자격이 구비된 자가 지 교회의 목사로 청빙을 받으면 노회 석상에서 임직한다.¹²⁵⁾ 이것은 목사가 어떠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노회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아야 한다. 안수를 베푸는 주체는 바로 노회이다. 그러므로 목사는 노회의 관할에 속한다. 목사의 임직과 장로의 임직의 차이는 목사는 노회에서 임직하고 장로는 지 교회에서 한다는 것이다.

2. 장로

125) 위의 책, 197쪽.

장로의 기원은 율법시대에 관리하는 장로가 있음같이 복음 시대에도 장로를 세워 목사를 협조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로 택하여 세운 것이다. 장로교회는 장로로 교회 정치를 하는 교회이다. 구약 시대의 장로와 초대교회의 장로와 오늘날 교회의 장로는 그 직능이 다르나 오늘도 교회에서 목사를 협조하여 치리 장로로 세우고 있다. 한국장로교회 헌법은 장로의 직무¹²⁶⁾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며,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하여 당회가 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두 가지 직무가 명시되는데 먼저 목사와 협력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치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한국장로교회의 헌법에는 목사의 직분이 중요한 만큼 장로의 직분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장로가 되는 자격¹²⁷⁾ 요건에 각종 제한을 두고 있다. 장로는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세상적인 지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당회록이나 교인들의 신령상 형편을 살필 수 있는 정도의 식견이 있어야 하고, 교인들이 교리적으로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지도할만한 통솔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세례를 받고 흠이 없이 7년을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고, 장로를 영어에서는 Elder(엘더)라고 하는데 늙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나이가 늙었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과 사회 경험과 학식과 도덕이 교회나 사회에 지도자적, 적격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40세 이상 된 자는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구 헌법에는 “남자”라는 규정이 있었으나 현행 헌

126) 위의 책, 199쪽.

127) 위의 책.

법에는 남녀 구별이 없어서 여자도 장로가 될 수 있게 되었다.

장로의 선택¹²⁸⁾은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지 교회의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장로로 선출되어야 한다. 처음에는 세례교인 30명에 장로 2인을 동시에 청원할 수 있으나 그 다음 증원부터는 세례교인 30명 비례로 1인씩만 증원하도록 되어 있다.¹²⁹⁾

장로 임직¹³⁰⁾에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장로로 피선된 사람은 6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양을 받아야 하고, 노회에서 시행하는 노회고시에 합격하여야 하며, 지 교회 당회가 결정하는 시일에 당회 주관으로 지 교회에서 임직을 받는다.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은퇴할 때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코자 하면 공동회회의 결의로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¹³¹⁾ 공동회회의 결의는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다수결로 한다.¹³²⁾ 원로장로 추대에 대한 공동의회에 명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수결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장로가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장로가 되어 20여년 시무하였으니 원로 장로 추대에도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명예스러운 것이다.

3. 집사

집사직은 초대교회에서 구제하는 특수한 일을 맡기기 위해 회중으로 하여금 집사들을 택하도록 하였으니 집사직은 사도행전 6장에서 유래

128) 위의 책, 199-200쪽.

129) 위의 책, 204쪽.

130) 위의 책, 200쪽.

131) 위의 책.

132) 위의 책.

되고 있다. 한국장로교회 헌법에서는 집사의 직무¹³³⁾를 초대 교회의 회중이 집사를 택한 것처럼 “교회의 택함을 받아야 하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어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는 일을 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맡아 보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한국장로교회 헌법에서는 집사의 자격¹³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집사는 교회의 재정을 맡은 자이므로 교우들의 신임을 받아야 하고, 봉사자이므로 진실한 신앙이 있어야 하며, 구제를 올바르게 하려면 지혜의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집사는 적어도 모범교인이어 하므로 세례를 받은 지 5년 이상을 지나야 교회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젊다는 이유로 멸시 당하지 않아야 함으로 30세 이상 된 남자로서 디모데전서 3장 8-10절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장로는 세례교인 30명에 한 사람 비례로 선택하지만 집사의 선택¹³⁵⁾은 당회의 결의로 선거는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구 헌법에서는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하였으나 현행헌법에서는 과반수 득표로 한다고 개정되었다. 집사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당회가 없는 미조직교회에서는 집사를 택할 수 없다. 그러나 미조직교회에서는 당회장의 직권으로 공동의회에서 집사를 택할 수 있다고 총회헌법해석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했다.¹³⁶⁾

133) 위의 책, 201쪽.

134) 위의 책, 202쪽.

135) 1954년 4월 제40회 총회에서 여권사의 자격은 여전도사와 같이 신앙의 연조가 깊고 교회 봉사에 경험이 많은 이로써, 선거 방법은 안수집사 선거방법에 의하며, 권한은 제직회원이 되고, 대우는 안수집사와 같이 무급으로 교회를 봉사하는 직분으로 규정하여 신설할 것을 결의하였다. 집사, 권사의 선택 방법은 같지만 남녀 구분을 두고 있다.

136) 임택진, 『장로교회 정치해설』, 146쪽.

집사의 임직¹³⁷⁾은 당회의 주관으로 지 교회에서 거행한다. 집사와 권사는 선거 후 3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양을 받고 시취 임직한다. 당회 아래서 교양이란 무엇인가? 집사로서 그 직무를 감당하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조항을 지키는 것이 본인에게는 물론 교회로서도 유익하다. 임직예식은 장로의 경우와 같다.

C. 임시직

장로교회의 직제는 삼직(목사, 장로, 집사)에 국한한다.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2:28에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 가운데는 “돕는 것”이란 은사도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교회는 임시직(돕는 직분)을 둔다. 항존적인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없어도 그 항존 직무는 외면할 수 없다. 목사가 없어도 교회가 교리권 내지 교훈권을 수행해야 하겠고, 장로가 없어도 치리하는 일을 방임할 수 없으며 안수 집사가 없어도 구제와 봉사하는 일을 외면할 수가 없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의 사정이야 어떠하든지 교회가 할 일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교회의 항존 직무를 위해 임시 직원을 세워 수행케 한 것이다. 목사의 직무를 방조할 전도사를 임시직으로 세우고, 안수집사의 직무를 방조할 서리집사를 세워 수행케 한다.¹³⁸⁾ 항존 직원은 교회의 항존 해야 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맡겨진 직무요 임시직원은 항존 직원을 방조할 직무이다. 그러나 임시직원의 직무도 교회 항존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동일하다. 항존 직원들이 모두 종신직인데 반해, 임시 직원은 모두 비종신직으로 임기가 있다는 점이

137)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개정위원회 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202쪽.

138) 임택진, 『장로교회 정치해설』, 71쪽.

서로 다르다. 임시직이란 시무 기간 동안만 직분이 있고, 시무를 그만 두면 그만두는 그 시간부터 직분도 없어진다.¹³⁹⁾ “임시직은 전도사와 서리집사이며 그 시무 기간은 1년이요 연임할 수 있다.”¹⁴⁰⁾고 했다. 이제 임시직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1. 전도사

한국장로교회 헌법에서 전도사를 임시직원¹⁴¹⁾으로 규정하고 그 직무¹⁴²⁾는 “당회 또는 목사가 관리하는 지 교회 시무나 당회 또는 목사를 돕는 일(심방, 교육, 설교 등)을 하는 유급 교역자”를 말한다.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회장이 될 수도 있다. 전도사는 목사와 장로가 합하여 일하는 당회의 치리권 행사를 위해 돕는 자요, 목사가 행하는 교리권 내지 교훈권 행사를 위해 돕는 자이다. 그러나 전도사는 그 직무를 전담하는 자가 아니라 당회와 목사를 돕는 임시직이다.

한국장로교회 헌법에서 전도사는 목사를 대신해서 지 교회를 시무하는 유급교역자이므로 다음과 같은 자격¹⁴³⁾을 요구하고 있다. 총회 인정 신학교 또는 성서학원 졸업자로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노회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목사의 자격 중 총회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의 교역에 종사한 경험을 가진 자라고 했으니,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로 교회를 시무한

139) 위의 책, 72쪽.

140)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개정위원회 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193쪽.

141) 위의 책.

142) 위의 책, 201쪽.

143) 위의 책.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전도사의 임직은 노회에서 하지만 안수하지 않고 교직은 당회에 있다.¹⁴⁴⁾ 단 시무 장로가 전도사가 되려면 시무 장로를 사임해야 하고 두 직분을 겸할 수는 없다.

2. 서리집사

서리집사란 안수 집사를 돕기 위해 선택한 임시직이다. “안수집사의 직무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¹⁴⁵⁾ 하였으니, 교회의 봉사와 헌금 수납과 구제에 관한 일이 서리집사의 직무이다. 그러나 안수 집사는 안수 받은 항존직이고 서리집사는 임시직이다. “서리집사는 신앙이 진실해야 하고, 무흠 세례교인 중에서 25세 이상 된 자로 당회가 임명”¹⁴⁶⁾하되, 그 교회에 등록된 후 2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는 자라야 한다. 1934년판 장로회 헌법 제7장 제1조에 지 교회의 당회원과 집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할 수 있고 당회가 각기 형편에 의하여 제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리 집사와 전도사에게 제직회원의 권리를 줄 수 있다고 하여 안수 집사는 제직회 정회원이지만 서리 집사와 전도사는 정회원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냈다.¹⁴⁷⁾ 그러나 현행 장로회 헌법에 서리 집사도 제직회 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⁴⁸⁾

144) 임택진, 『장로교회 정치해설』, 132쪽.

145)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개정위원회 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201쪽.

146) 위의 책.

147)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大韓예수 教長老會 憲法』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30), 86쪽.

148)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개정위원회 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D. 여성교직제도

1. 여성치리권 청원

개신교회의 선교는 개화운동이 이제 막 시작되는 상황 속에서 시작되었다. 당시의 개혁파 인사들은 서양 선교사들의 손을 빌어 개화를 추진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1885년 4월 5일(부활절)에 미국의 첫 선교사들이 ‘교육사업과 의료사업’을 목표로 이 나라에 도착하였다. 선교사들의 교육사업은 자연스럽게 여성교육으로 이어졌고, 특히 스크랜튼(Scranton) 부인은 여성교육을 통한 여성선교를 하기 위해 이 나라에 왔다. 그는 근대 여성교육의 효시인 ‘이화학당’(1886년 11월)을 시작했다. 선교사들은 일부일처제의 가정윤리를 강조했고 조혼·축첩·여아 매매 등을 개혁되어야 할 폐습으로 지적했다. 또 실질적인 남녀동등을 위해서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여성개화운동은 ‘을사조약’(1905년) 이후에 자주독립과 국권회복을 위한 애국계몽운동으로 발전되기 시작했다. 이 운동에서 강조된 점은 구국교육이었다.

이러한 여성의 자의식은 경술국치(1910년) 이래로 민족의식으로 발전되었다. 교회 여성들은 이제 민족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여성 개화와 계몽이 교회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교회는 여성들만을 위한 성경반·사경회·성경학교 등을 개최하면서 미신타파·한글학습·생활개선 등을 병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탄생한 기독교여성운동단체는 ‘조선여자기독교청년연합회’(YWCA, 1923년 8월)였다. 이 연합회는 남녀평등을 확보하려면 먼저 여성의 권리부터 회복되어야 한다고 보고, 여권회복을 위

』, 214쪽.

한 축척과 조혼금지 및 공창폐지 운동을 벌였다. 또 한편 연합회와 절제회는 함께 연대해서 금주 금연 및 절제 운동을 펼쳐 나갔다. 개신교 초창기에 선교사들은 내외법으로 인해 바깥 세계와 차단된 조선 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부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다. 선교사들은 전도부인을 양성하면서 전도에 필요한 만큼의 간단한 성경지식을 가르치고 전도에 종사하게 했었다.¹⁴⁹⁾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장로교회가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못하게 했던 근거는 헌법 제5장 23조 5항으로, 목사의 자격을 “27세 이상 된 남자”¹⁵⁰⁾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우리 교회의 여성 안수 문제는 1907년 독노회가 창설되던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첫 노회에서 “목사와 장로는 세례 받은 남자여야 한다.”¹⁵¹⁾고 규정하여 여성안수 내지는 여성의 교회 치리, 강도권을 원천적으로 법으로 규제하였다. 이 규정이 여성안수의 길을 막고 있었다. 이미 장로교회는 제2회 독노회 때 제주도예 여전도인 1인을 파송키로 했으며,¹⁵²⁾ 제3회 독노회 때 평양성 자매들이 연보하여 제주도예 여전도인 시선광씨를 파송했다.¹⁵³⁾ 1922년 9월 제 11회 총회에서는 여 집사의 집권의무는 남 서리집사와 같다.¹⁵⁴⁾는 결론을 내렸다. 1932년 제21회 총회에서 주일예배 때에

149) 임희국, “교회 여성들의 자의식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사미자 박사학위논문출판위원회 편, 『현대교회와 교육』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1), 302-21쪽.

150)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大韓 예수 教長老會 憲法』, 64쪽.

151) 김인수, “여성과 여성안수의 이해에 대한 교회사적 고찰,” 장로회신학대학 다원화목회연구원 편, 『교역과 여성안수』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92), 35쪽.

15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80주년기념집』, 15쪽.

153) 위의 책, 17쪽.

여자에게 기도권을 주는 일은 각 당회가 유익을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¹⁵⁴⁾ 이렇게 초기 한국장로교회에는 여성들의 많은 활동들이 있었다.

1930년 미국 연합장로교회가 여성에게 시무장로를 허락한다는 결의를 하게 되자, 1932년 경안노회가 이 문제에 대해 총회에 “어느 성서에 근거하여 이런 결정을 했으며, 동일한 신조를 갖고 있는 우리 교회는 왜 저들과 다르게 해석하느냐”는 질의를 하였다. 이에 총회는 답하기를 “우리 와 상관할 것이 없고, 우리 조선장로교는 본 정치에 의하여” 여자장로를 세울 수 없다고 답했다. 이는 총회가 “성서에 입각하여” 답하지 아니하고 “정치에 의하여”라고 답함으로써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정치라는 다른 권위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1933년 함남 여전도회에 본격적으로 여장로 제도를 실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청원운동에 나서, 제22차 총회에 헌의할 것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벌려 회장 최영혜 이하 회원 104명의 연서로 함남노회에 제출하였다. 노회는 이들의 청원을 인정하여 정식으로 총회의 헌의안으로 제출케 되어 최초로 여성안수 문제가 총회의 의제로 상정되게 되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2회 총회’는 이 안건을 토의하였으나, “정치 제5장 3조(장로의 자격: 만30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없이 5년 이상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딤편 3:1-7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를 개정할 필요가 없음으로 허락할 수 없으며...”¹⁵⁵⁾라는 결의로 부결시켰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점도 밝혔다. 그러나 청원서를 올린 최영혜 등의 여성 대표들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이 “(여권)운동이 성

154) 위의 책, 49쪽.

155) 위의 책, 74쪽.

156) 김인수, “여성과 여성안수의 이해에 대한 교회사적 고찰,” 35-36쪽.

공할 때까지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그 이듬해에 함남지역 22개 장로교회의 여성 639명이 6월에 모인 함남노회(19회)에서 다시 한번 여성의 교회치리권 청원을 연서로 제출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성의 참정권 즉, 여성에게도 목사의 자격을 부여하라.¹⁵⁷⁾고 청원했다.

이 즈음에 이 문제와 연관하여 총회에 문제가 된 것은 김춘배 목사가 기독교신보 977호 여권문제라고 한 제목 하에 “바울이 여자는 조용하라, 여자는 가르치지 말라는 2천년 전의 한 지방교회의 교훈과 풍습일 뿐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다.”¹⁵⁸⁾라고 한 해석은 회원(제23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들에게 매우 못마땅한 부분이었다. 이에 총회는 연구위원으로 라부열, 부위립, 김봉남, 윤하영, 박형룡 제씨를 선정하여 연구하도록 결안하고 정치부를 통하여 내년 총회 시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다음 해인 1935년 제24회 총회에서 여성안수 문제는 연구위원들의 보고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여자는 장로가 될 없음은 만고의 진리”¹⁵⁹⁾라고 선포하게 되었다.

해방 후 첫 해인 1946년 32회 총회에서 김필레, 유각경, 신의경, 김말봉이 치리 당할 것을 각오하면서 이 안건을 총회에 헌의하였다. 총회는 24차 총회의 결의를 반복하고 이 문제를 의제로 다루었으나 “여자장로직의 설정문제는 남북통일 총회시까지 보류한다.”¹⁶⁰⁾고 결의하였다. 1954년 4월 제40회 총회에서 “여권사의 자격은 여전도사와 같이 신앙의 연조가 깊고 교회 봉사에 경험이 많은 이로써, 선거 방법은 안수집사 선거방법

157) 임희국, “교회 여성들의 자의식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311쪽.

158) 이연옥,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여성안수: 헌의에서 법제화까지』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전국여전도 연합회, 1995), 8쪽.

159) 김인수, “여성과 여성안수의 이해에 대한 교회사적 고찰,” 36-37쪽.

160) 위의 책.

에 의하며, 권한은 제직회원이 되고, 대우는 안수집사와 같이 무급으로 교회를 봉사하는 직분으로 규정”¹⁶¹⁾하여 신설할 것을 결의하였다.

1961년 제46회 총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전도회장 최이권 씨의 “여장로” 청원권을 토의한 바, 1년 더 연구하자는 동의와 기각하자는 개이가 있으면서 투표결과 가 84표, 부 42표로 기각 당하였다.¹⁶²⁾ 1984년 제69회 총회는 268:462표로 부결 후 여장로 제도 청원의 건은 정책협의회에 맡겨 협의키로 하였으나 선교동역자 중 안수 받은 여자 목사에게는 언권회원으로 허락¹⁶³⁾하였다. 1993년 7월 총회는 정치 제5장 제25조 2항,¹⁶⁴⁾ 4항,¹⁶⁵⁾ 제16장 제100조, 제101조¹⁶⁶⁾을 개정하게 되었다.

1994년 제79회 총회는 여전도회 지도위원회와 24개 노회가 청원한 여성안수를 허락해 달라는 것은 찬반 토론 없이 투표에 부쳐졌다. 그 결과 총 투표자수 1321명 중 찬표 701표, 부표612표, 기권8표로 89표차로 여성안수가 최초로 현의한 1933년 이래 61년 만에 허락이 되었다.¹⁶⁷⁾ 총회에서 여성안수 문제와 총대수를 1,500명으로 하는 현의 안이 통과되어 노회수의를 거쳐서 1995년 5월 27일, 정치 제5장 제25조 목사의 자격 2항,¹⁶⁸⁾ 제27조 목사의 칭호 2항,¹⁶⁹⁾ 제6장 제40조 장로의 자격¹⁷⁰⁾, 제

16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80주년기념집』, 131쪽.

162) 이연옥, 『여성안수』, 9쪽.

16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출판국,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80주년기념집』, 311쪽.

164) 30세 이상 된 남자. 에서 “남자” 삭제.

165) 총회직영 신학대학에서 총회직영신학대학원으로 개정.

166)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개정위원회 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279쪽.(헌법개정 연혁)

167) 이연옥, 『여성안수』, 87쪽.

168) 구 헌법(1987년판)에서 ‘30세 이상 된 남자’에서 ‘남자’를 삭제.

12장 제81조¹⁷¹⁾ 총회의 조직이 개정된 것을 공포¹⁷²⁾되었는데 이는 51개 노회가 봄노회 수의 결과 목사직 총 투표수 8,060표 중 가표 5,546표로 73.8%, 장로직 총 투표수 8,057표 중 가표 5,997표로 74.4%로 여성안수 헌의 역사 62년 만에 역사적인 여성성직 법제화¹⁷³⁾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96. 4. 28. 한국장로교회(통합)는 여성으로 서울노회 안동교회 박숙란씨가 첫 장로 안수 받았다. 1996. 9. 14. 한국장로교회(통합)는 첫 여성목사고시 합격자 77명을 배출했고, 1996. 10. 8. 한국장로교회(통합)는 여성으로 울산노회 박진숙씨가 첫 목사안수를 받았다.¹⁷⁴⁾

2. 권사

권사의 직분은 한국교회가 제정한 직분이다. 1922년 판 제13장 9조에 “여집사를 선택할 필요가 있으면 당회는 진실하고 성결한 여인 중에서 자백(自辟) 선정할 수 있으니, 기도로 임직하되 안수식은 없느니라”¹⁷⁵⁾

169) 구 헌법(1987년판)에서는 임시목사 시무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170) 구 헌법(1987년판)에서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고 무흠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 된 자로서 디모테전서 3:1-7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에서 디모테전서 3:1-7을 삭제하고 30세에서 40세로 조정.

171) 구 헌법(1987년판)에서 총회 파송 비율은 무흠 입교인 1,000명당 목사, 장로 각 1인으로 하고 최종 증원 단위는 입교인 500명을 초과할 때 더 파송한다. 에서 파송 비율은 각 노회당 목사, 장로 각 4인을 기본수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비율에 따라 목사, 장로 동수로 배정하되 회원 총수는 1,500명 이내로 한다. 로 개정.

17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개정위원회 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279쪽.(헌법개정 연혁)

173) 이연옥, 『여성안수』, 85-87쪽.

174) www.pck.or.kr. 2004. 11.15.(총회 인터넷 홈페이지 총회역사)

로 되어 있다. 1934년판에서는 직원의 장에 권사직이 없다. 다만 연합제직회의 직무를 설명하면서 “남녀 전도사, 권사, 전도인을 투표 선정하되...”라고 하여 권사의 직분이 나타난다.¹⁷⁶⁾ 1954년 4월 제39회 총회에서 “여권사의 자격은 여전도사와 같이 신앙의 연조가 깊고 교회 봉사에 경험이 많은 이로써, 선거 방법은 안수집사 선거방법에 의하며, 권한은 제직회원이 되고, 대우는 안수집사와 같이 무급으로 교회를 봉사하는 직분으로 규정”¹⁷⁷⁾하여 신설할 것을 결의하였고, 1954년 판은 제12조(임시직원) 1항 전도사, 2항 전도인, 3항 권사, “권사는 여자로 하되 안수 받지 않는 종신직이다.”¹⁷⁸⁾고 하여 비로소 권사가 교회의 독립된 직분으로 나타난다. 권사라는 직분은 초기 한국교회 특히 평양 지방에서 심방과 개인전도, 성경공부와 교회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여교역자를 부르던 직명이다. 그 후 여교역자를 전도사로 부르면서부터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충성하는 여자 집사 중에서 나이 많은 사람을 당회에서 권사라는 명예를 부여하여 교회에 계속 봉사하게 하였다. 당시 교회의 요청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 권사이다.¹⁷⁹⁾

한국장로교회의 헌법은 권사의 직무¹⁸⁰⁾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교회에서 택함을 받아야 하고, 권사로 임직을 받으면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잘 도와야하며, 교우 중에 궁핍한 자나 환난 당한 교우를

175) 朴炳珍, 『교회제직교본』, 154쪽.

176)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大韓 예수 教長老會 憲法』, 74쪽.

177)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80주년기념집』, 131쪽.

178) 朴炳珍, 『교회제직교본』, 155쪽.

179) 임택진, 『장로교회 정치해설』, 143쪽.

180)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개정위원회 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202쪽.

심방하며 위로하며, 교회와 교인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 힘써야 하는 직무를 맡는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자격을 필요로 한다. “권사로 임직 받을 자는 무흠 세례교인으로 5년을 경과해야 하고, 30세 이상 된 여자 성도로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¹⁸¹⁾ 과거에는 나이가 40세 이상 된 여신도로 규정하였으나 개정된 헌법에서는 30세 이상 된 여자로 개정되었다. 권사를 남녀 구별이 없이 선택하는 교파도 있고 항존직이 아닌 임시직으로 정한 교파도 있으나 한국장로교회(통합)은 여자로 규정하고 있다.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¹⁸²⁾ 1954년 4월 제39회 총회에서 여권사의 자격은 여전도사와 같이 신앙의 연조가 깊고 교회 봉사에 경험이 많은 이로써, 선거 방법은 안수집사 선거방법에 의하며, 권한은 제직회원이 되고, 대우는 안수집사와 같이 무급으로 교회를 봉사하는 직분¹⁸³⁾으로 규정하여 신설할 것을 결의하였다. 권사직을 안수는 하지 않는 항존직으로 제정하고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받아 취임함으로써 서약을 받고 권면도 한다.¹⁸⁴⁾ 그러나 1994년 제79회 총회에서 여성안수를 허락함으로써 인해 안수를 하고 있다. 한국장로교회 헌법에서는 안수집사는 남자, 권사는 여자로 구분하고 있다.¹⁸⁵⁾

181) 위의 책.

182) 위의 책.

18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출판국,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80주년기념집』, 131쪽.

184) 임택진, 『장로교회 정치해설』, 143쪽.

185)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개정위원회 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202쪽.

E. 목사후보생

1934년판 헌법 정치 3장 4조에 “강도사와 후보생은 준직원이다.”¹⁸⁶⁾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장로교회 헌법은 목사직은 거룩하고 존귀하므로 목사의 희망자는 “노회의 자격 심사를 받고 그 지도 아래 신학을 연수하는 자”¹⁸⁷⁾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노회의 추천으로 총회직영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목사직을 위해 수업하는 신학생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할 사람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정결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목사 후보자 희망자에 대한 취급은 엄격해야 한다. 목사 후보생은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는 교회의 직원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신분과 지위에 있어서는 독특한 점을 지니고 있다. 헌법이 이들의 소속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즉 신분으로서는 목사가 아닌 평신도이므로 당회의 관할에 있고, 직무상으로는 목사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노회의 관할 아래 있음을 밝히고 있다.¹⁸⁸⁾

F. 폐지된 교직제도

교회 창설 사역의 종결과 함께 사도의 직분이 폐지되었다. 사도의 직분 외에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도 폐지되었다. 마찬가지로 한국장로교회에도 초기의 직분들이 시대적인 흐름으로 인해 폐지된 직분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조사(助查)와 영수(領袖), 강도사와 전도인 등이 있다.

186)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大韓 예수 教長老會 憲法』, 74쪽.

187)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개정위원회 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199쪽.

188) 위의 책.

1. 조사(助查)와 영수(領袖)

초기 선교사들이 전도하고 교회를 지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도울 직분이 필요성이 생겼다. 이때 한국인 신자 가운데서 두 가지 직분이 생겨났다. 그것이 조사(助查)와 영수(領袖)라는 직분이다. 조사는 선교사들의 어학 선생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선교사들과 아주 밀착되어 신앙생활로 연단하고 교회의 크고 작은 일에 훈련 쌓은 분들이다. 그들은 선교사들의 전도 여행이나 순회 집회는 언제나 동반하였으며, 선교사들이 언어의 장애로 어려움을 당하므로 그들 대신 설교는 물론 가르치는 일도 했으며, 교회 치리하는 일에도 참여하였다. 조사는 대체로 장로들로 선교사의 위임을 받아 단독으로 제반사를 처리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조사직은 실제에 있어서 목사 안수는 받지 않았으나 목사의 역할을 하였다. 조사가 선교 거점의 출신이라면 영수는 선교 거점의 지 교회나 예배 처소 출신이다. 영수는 지 교회 신도 중에서 선출되어 선교사나 조사가 부재시에 교회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조사나 선교사의 협의 대상이 되었다. 조사가 안수 받지 않은 목사라면 영수는 안수 받지 않은 장로였다.¹⁸⁹⁾

1934년판 교회 정치 제3장 제3조에 임시직원으로 “전도사, 전도인, 남녀서리집사, 영수(領袖)”가 있었다. 동 3항에 규정된 직무를 보면 목사 없는 미조직교회가 “당회가 조직될 때까지 교회 혹은 목사가 선택하여 지 교회를 인도하게 하되 임기는 1년간이다.”¹⁹⁰⁾라고 했다. 그러므로 전도사와 전도인의 직무가 교리권 내지 교훈권의 방조(傍助)요, 권사와 서리집사의 직무가 봉사권의 방조(傍助)일진데, 남은 직무는 치리권이요, 남은 직

189) 李昌承. 『教會의 歷史와 政治』 (부산: 태화출판사, 1989), 209쪽.

190)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大韓예수 敎長老會 憲法』, 74쪽.

분은 항존 직원인 장로와 임시직원인 영수뿐이다. 결국 구 헌법에서 말하는 영수의 “지 교회를 인도하는 직무”란 장로의 치리권 행사를 방조(傍助)하는 직무요, 그러므로 영수의 직무는 치리권을 맡은 장로의 직무와 본질상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찾아보게 된다.¹⁹¹⁾ 그런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1954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영수직을 아예 폐지하고 말았다.

2. 강도사

1934년판 교회 정치 제3장 4조 “강도사(講道師)와 후보생(候補生)은 준직원(準職員)이니라”¹⁹²⁾고 규정하고 있다. 강도사란 이제 신학공부는다 마치고 강도사 인허를 받았으니, 노회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여부를 강도를 시키면서, 확인하는 것이요, 본인은 본인의 소명을 강도(講道) 직무를 실천하면서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목사가 되어서는 아니될 자를 가려내는 처지 하에 놓인 직분¹⁹³⁾이라고 했는데 한국장로교회(통합)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이 직분은 없어졌다.

3. 전도인

1934년판 교회 정치 제3장 2조 2항에 “남녀 전도인은 유급사역자로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자니 그 사업 상황을 선정 파송한 기관에 보고하고, 다른 지방에서 전도에 착수할 것이면 그 구역 감독기관에 협의하며 보고할 것이니라.”¹⁹⁴⁾ 이미 장로교회는 제2회 독노회(1908. 9. 황성 연동

191) 위의 책, 74쪽.

19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大韓예수 教長老會 憲法』, 74쪽.

193) 박근원, “칼빈의 교회론,” 164쪽.

교회)때 제주도에 여전도인 1인을 파송키로 했으며,¹⁹⁵⁾ 제3회 독노회(1909. 9. 평양신학교)때 평양성 자매들이 연보하여 제주도에 여전도인 시선광씨를 파송했다.¹⁹⁶⁾ 여전도인에게 강도(講道)권을 허락해 달라는 헌의에 대하여 교회 형편에 따라 목사, 강도사, 장로 외에 타 교인에게 강도시킬 수 있다¹⁹⁷⁾고 답변했다. 한국장로교회의 초기부터 있어왔던 전도인의 직분이 교단이 깨지면서 제각기 교단의 헌법들을 가지게 되면서 이 직분을 삭제했다. 한국장로교회(통합)은 1971년에 이 직분을 삭제하고 말았다. 그러나 전도인이란 전도사와 방불한 임시직원의 일종이다.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유급교역자”라고 하였으니 다른 설명이 더 필요치 아니하다고 생각한다. 편의상 전도사와 비교한다면 전도사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신학졸업자나 신학생으로 한다는 자격 규정이 있으나, 전도인은 그런 기준을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전자는 노회 고시의 고시를 통한 인가가 있어야 하나, 후자는 그런 규정이 없으며, 전자는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후자는 전혀 권한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전자는 유급교역자라 호칭하였으나, 후자는 유급 사역자라 하였으며, 전자는 “당회나 목사의 관리하는 지교회 방조”를 그 직무로 하였으나, 후자는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즉 전도사는 주로 교회 안에서 이미 교회로 들어온 양무리를 위하여 일하는 직분이고, 전도인은 교회 밖에서 전도하여 양무리를 교회 안으로 들여보내는 직분이며, 전도사의 직무는 본질적으로 목사의 직무와 같아서 교리권 내지 교훈권과 치리권을 방조하는 것이고 하였거니와, 전도인 직무는 오직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한 가지 일이 맡겨졌을 뿐이다.

194)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大韓 예수 教長老會 憲法』, 74쪽.

19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80주년기념집』, 15쪽.

196) 위의 책, 17쪽.

197) 위의 책, 67쪽.

전도사와 전도인은 이같이 여러 가지로 다른 면이 있는 반면 성질상 서로 동일하거나 동등한 면도 없지 아니하다. 전도사와 전도인은 다같이 임시직원이라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며, 교역자이든지 사역자이든지 호칭은 달라도 유급직원이라는 점에서는 서로 동일하며, 미조직교회에서는 다같이 제직회 사무를 임시로 집행할 수 있다¹⁹⁸⁾는 점에서도 서로 동등하다. 이 직분이 헌법에는 삭제하고 없으나 총회 주소록에서는 전도인을 담임교역자란¹⁹⁹⁾에 사용하고 있다.

198) 朴炳珍, 『教會政治通覽』, 137쪽.

199)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회주소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39쪽.

IV. 한국장로교회에 적용된 칼빈의 교직제도

A. 한국장로교회에 적용된 칼빈의 교직제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시고 사람을 세우셔서 사람의 봉사를 통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식을 취하셨다. 칼빈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교회에는 받은바 은사에 따른 직제가 필요하다²⁰⁰⁾고 보았다. 그러나 칼빈은 직분을 맡았건 안 맡았건 한 교회의 교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함께 살며 예언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삼중직무를 함께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칼빈이 교회의 사도직을 설명하면서 그 직분이 한 사람의 사제에게 주어지지 않고 선택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에 주어졌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곧 교회 전체가 사도와 예언자의 가르침에 따라 그리스도를 증거 해야 할 사도적 사명이 있음을 전제로 한 말이었다. 한국장로교회는 치리권을 감독체제에 맡기지 않고, “교회가 택하여 세운 대표자”에게 맡기는 “장로제도”(presbyterianism)를 택하고 있다.²⁰¹⁾ 한국 장로교회 헌법은 “치리권은 온 교회가 택하여 세운 대표자로 행사한다. 치리권의 행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봉하며 전달하는 것뿐이다.”²⁰²⁾라고 말한다. 이러한 직분을 가진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이다. 그 직분의 기능을 수행하는 직분자이다. 장로는 교인의 대표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교회의 직분이다. 장로가 교인 중에서 교인들의 선택을 받았다 해서 교인들이 만들어 낸 직분이 아니며 교인의 대변자도 아니다. 그는 엄연히 그리스도의

200) 박근원, “칼빈의 교회론,” 175쪽.

201) *Inst.* IV. iv. 1.

20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개정위원회 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170쪽.

부름을 받고 그에게서 사명을 받은 직분자이다. 한국장로교회 내에서 장로는 교인의 대표자라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 목사는 일시 개 교회에 고용되는 직분이요,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로 교인들을 대변하는 직분으로 의식되고 있다. 한국장로회 헌법에는 치리권은 개인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치리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²⁰³⁾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장로교회의 헌법은 간접민주주의 정치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제네바 시의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한국장로교는 국교분리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칼빈은 주님께서 그의 교회를 다스리시기 위해 제정하신 직제는 네 가지 형태라고 말한다. 즉 목사, 교사, 장로, 집사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직분들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서 우리들에게까지 전해 온 교회 정치 질서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직분들이다.²⁰⁴⁾고 말한다. 한국장로교회 헌법은 칼빈의 직분관을 따라 “항존직”을 두고 있으며, 또한 다양화된 현대 사회 흐름에 맞추어 “임시직”을 두어서 다양한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봉사의 문을 넓혀 놓았다. 한국교회에는 항상 있어야 할 직분인 “항존직”에는 장로, 집사, 권사가 있으며, “장로”를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 장로”로 나누어, 가르치는 장로는 “말씀”과 “성례전”의 교역을 맡고, 치리 장로는 주로 치리만 담당한다.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이고 치리 장로는 장로로 구분한다.²⁰⁵⁾ 한국

203)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개정위원회 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184쪽.

204) 이형기, 『교회의 직제와 평신도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1), 194쪽.

205)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개정위원회 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173쪽.

장로교회 헌법에는 목사의 직무를 네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교훈권과 성례권과 축복권과 치리권이다. 목사는 노회가 지교회로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전을 집례하며, 치리회를 사회하고 지교회의 행정(섬김과 봉사)권을 수행하도록 파송하고 위임한다. 목사직은 섬김과 봉사의 직이며, 교회의 행정직이란 바로 이런 직무를 말한다. 한국장로교회 목사는 칼빈이 주장하는 4종직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칼빈에 의하면 목사를 말씀을 수종드는 자라고 할 때 칭호가 여러 가지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장로교회도 목사의 여러 가지 칭호가 있다.²⁰⁶⁾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로교회는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나머지는 모두가 동일한 일체이다. 그러므로 한국 장로회 헌법은 성직자의 평등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목사의 칭호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로 규정하여 목사의 등급을 나누는 것처럼 되어 있다. 이 시대는 다양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교회와 목회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담임목사와 부목사의 수직적 구조만으로는 교회를 바로 이끌어 갈 수 없다. 교회 안에 목회자의 은사에 따라 소신껏 목회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의 성직 계급주의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반해 한국 장로교회의 헌법은 여전히 성직계급주의를 헌법규정 속에 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원로목사 제도도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를 원로목사로 예우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목사가 은퇴 후에도 완전히 교회와 단절되지 않고 후임 교역자와 교회에 많은 혼란을 주기도 한다. 심지어 몇몇 원로 목사들은 자신이 담임하던 교회에 자신의 아들, 사위에게 그 목사직을 세습하고 있

206)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개정위원회 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195-96쪽.

는 실정이다. 원로목사는 사실상 은퇴목사로 법적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장로교회는 원로목사 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칼빈은 장로에 대해서 “다스리는 자들은 신자들 사이에서 선택된 장로들이었으며, 함께 도덕적인 견책과 권징을 시행하는 일을 맡았다고 나는 믿는다.”²⁰⁷⁾고 말한다. 그런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장로의 직무를 크게 두 가지로 명시하는데, 먼저 목사와 협력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치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어야 하는데 한국장로교회 헌법은 한번 장로를 선출하고 나면 70세까지 종신직이고, 또 은퇴를 하더라도 원로장로, 은퇴장로라는 직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의제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현대 정치의식에 따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종신제를 택하기보다는 일정한 임기를 두고 그 기간동안 교인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로서 역할을 하고, 시무 임기가 끝나면 다시 교인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지 검증을 받든 아니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처음으로 성경적인 직분을 교회에 회복하고 장로 제도를 도입했을 때, 장로들의 직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규칙적으로 가정을 심방하므로 양무리를 돌보아 감독하는 일이었다. 장로들이 일반 직업에 종사하면서 이 직분을 계속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장로직의 봉사 기간을 일년으로 한정했었다.²⁰⁸⁾ 장로교회가 택하고 있는 정치는 본질적으로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므로 목사와 장로의 관계는 결코 계급적, 교권적 차이가 아니라 목사가 장로들과 함께

207) *Inst.* IV. iii. 8.

208) 허순길, 『개혁해 가는 교회』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1), 44쪽.

교회를 감독하고 다스리는 직책 외에 설교하는 직책을 더 받았기에 다른 장로들보다 더 큰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딤후 5:7) 그러나 이 존경이 결코 높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목사와 장로는 주님의 교회를 감독하고 다스리는 일에 동역자들이요 협력자들이다. 목사와 장로는 언제나 주님의 교회의 봉사라는 목적을 위해 협력하고 함께 봉사할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칼빈은 교사(doctor)에 대해서 “교사의 바른 직무는 복음의 순수성이 무지나 사악한 교리에 의해서 부패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믿는 성도들에게 성경과 신학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다.”²⁰⁹⁾라고 말하면서 신학을 가르쳐야 할 학교의 필요성을 주장하되 이 같은 교육을 교회의 직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특이할 만하다. 이는 신학교의 교수와 미션 스쿨이 교회의 직제에 관련되어 있음을 말한다.²¹⁰⁾ 칼빈은 에베소서 4장 11절 해석에서 목사와 교사의 직분이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 교사가 구약의 선지자에 해당한다면 목사는 사도와 유사한 점이 있다. 칼빈의 교회론에서 교사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여기에 반해 한국장로교회 헌법에는 “기관목사는 총회나 노회 및 관계 기관에서 교육, 문서 등 사업에 종사하는 목사다.”²¹¹⁾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총회 주소록에도 교육 기관을 따로 구분하고, 각 노회에서는 기관 목사를 각급 학원에 파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²¹²⁾ 한국장로회 헌법의 총회의 직무들 중에서 “총회는 신학대학을 설립하고 경영, 관리하며, 교역자를 양성한다. 총회는 선교사업, 교육사업, 사회

209) *Inst.* IV. iii. 4.

210) 이형기, 『교회의 직제와 평신도론』, 197쪽.

21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개정위원회 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195쪽.

21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회주소록』, 29, 49쪽.

사업을 계획 실천한다.”²¹³⁾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총회는 교역자 양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칼빈에 의하면 두 종류의 집사들이 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9-10에 근거하여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돌보는 공적 직분은 여성들에게 맡길 수 있다고 가르친다.²¹⁴⁾ 칼빈의 집사직은 제네바 시의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었다. 결국 칼빈의 집사직은 교회 안에서보다도 교회 밖에서 기독교적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다.²¹⁵⁾ 반면에 한국장로교회 헌법에는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²¹⁶⁾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²¹⁷⁾고 기록하고 있다. 칼빈은 두 종류의 집사직을 말했는데 한국장로교회 헌법에는 칼빈의 구제에 관한 집사를 집사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돌아보는 집사를 권사라는 직분을 만들어 놓았다.

집사직은 로마 카톨릭 교회나 감독 교회에서도 있는 직분이다. 그들의 집사는 서열에 준한다. 그러나 장로교회에서는 봉사직을 대표한다.²¹⁸⁾ 칼빈은 교황과 주교와 감독 등의 계급적인 성직을 보고 비성서적임을 지적하였다.²¹⁹⁾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 받은 집사들이다. 한국장

213)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개정위원회 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192쪽.

214) *Inst.* IV. iii. 9.

215) 이형기, 『교회의 직제와 평신도론』, 199쪽.

216)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개정위원회 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201쪽.

217) 위의 책, 202쪽.

218) 임택진, 『장로교회 정치해설』, 139쪽.

로교회 헌법에서 집사와 권사는 안수로 임직하는 항존직이며, 항존직 외에 임시직인 서리집사를 두고 있다. 그것은 마치 계급 같은 인상을 준다. 원래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 교회 직분에는 계층이 있을 수 없다. 주님 당시나 사도 당시의 있었던 직분에는 전혀 계급이 없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왔다는 말씀은 섬김의 직분과 봉사의 직분이 곧 주님의 직분이며 교회의 직분이며 모든 제직의 기본자세임을 말한다.

B. 한국장로교회의 자생적 교직제도

1934년판 헌법에 “임시직은 교회 사정에 의하여 안수 없이 임시로 설치하여 세우는 직분이다.”²²⁰⁾라고 했는데 한국장로교회 헌법에는 시대적인 흐름과 한국 상황에 따라 여러 직분을 두고 있는데 이 직분에는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가 있다. 한국장로교회 헌법에 전도사의 직무란 “당회 또는 목사가 관리하는 지 교회를 시무하는 일이다.”²²¹⁾라고 기록하고 있다. 전도사는 성경에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서로 돕는 것”이란 은사가 있는데 당회 또는 목사가 관리하는 지 교회 당회 또는 목사를 돕는 일이다. 초기 한국 교회에서 당회와 목사를 돕는 유급 교역자를 조사(助事)라고 했는데 오늘의 전도사이다.²²²⁾ 전도사는 목사와 장로가 합하여 일하는 당회 치리권 행사를 위해 돕는 자요, 목사가 행하는

219) *Inst.* IV. x ix. 32-33.

220)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大韓예수 教長老會 憲法』, 74쪽.

22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개정위원회 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201쪽.

222) 임택진, 『장로교회 정치해설』, 134쪽.

교리권 내지 교훈권 행사를 위해 돕는 자이다. 그러나 전도사는 그 직무를 전담하는 자가 아니라 당회와 목사를 돕는 임시직이다. 한국장로교회 헌법에는 없는 교육부서에서 봉사하는 교육전도사라는 독특한 직분을 한국장로교회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칼빈은 로마서 12:8절 중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는 구제를 담당하는 집사들로, “공활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돌보는 데에 헌신하는 집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9-10에 근거하여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직분은 여성들에게 맡길 수 있다고 가르친다.²²³⁾ 여기에서 한국장로교회의 권사직은 한편으로는 칼빈의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직분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여지며, 또 한편으로는 1933년대부터 여성안수 문제가 상정되어왔으나 허락되지 않고 1954년 제40회 총회는 여자 장로를 허락하지 않는 대신에 안수 집사와 같은 대우의 권사제도를 신설할 것을 결의하였다. 선거 방법은 안수집사 선거방법에 의해 선거하며 임직하되 안수하지 않은 항존직이었으나 1994년 제79회 총회에서 여성안수를 허락함으로써 인해 안수를 하고 있다.

한국장로교회가 권사를 항존직이라고 해도 명예직을 주도록 규정이 없는데 명예직을 줄 수 없는데 명예직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혹 과거에 권사로 봉사했던 분들이라고 해도 합당치 아니한데, 서리 집사 중에서 가려 뽑아 명예권사직을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 헌법 규정을 어겨가면서 교회들이 명예직을 맡기고자 한다면 비현실적인 법을 가지고 교회들이 불법을 행하기보다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현실화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서리 집사란 안수 집사를 돕기 위해 선택한 임시직이다. 서리 집사의 임기는 1년이다. 서리집사의 직무는 안수 집사의 직무를 돕는 자이므로

223) *Inst.* IV. iii. 9.

안수 집사의 직무와 같다. 안수 집사의 직무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²²⁴⁾ 하였으니 교회 봉사와 헌금 수납과 구제에 관한 일이 서리 집사의 직무이다. 한국장로회 헌법에는 서리집사도 제직회 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²²⁵⁾

목사직 희망자들을 신학적으로 훈련시켜야 할 필요성을 종교개혁 직후에 교회지도자들이 절실히 느꼈다. 종교개혁 후 개혁 교회에 목사들의 수요는 크게 부족하고 일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은 자격이 부족하므로 개혁 교회 치리회는 교역자 양성을 강조하게 되었다.²²⁶⁾ 그리하여 1561년에는 목사 후보생과 국가 공직자 양성을 위해 대학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²⁷⁾ 한국장로교회 헌법에도 목사 후보생을 두고 있다.

224)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개정위원회 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201쪽.

225) 위의 책, 214쪽.

226) 임택진, 『장로교회 정치해설』, 112쪽.

227) 이형기, 『교회의 직제와 평신도론』, 214쪽.

V. 결론

A. 요약

종교개혁자 칼빈(1509-1564)은 제네바 교회의 목회자로 평생을 살았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서, 목회를 자신의 일생의 과제로 삼았고, 오로지 교회를 위해 봉사한 인물이다. 그는 성서에 근거한 초대 교회의 모범을 따라 교회를 개혁하였다. 칼빈의 가장 뛰어난 업적 중의 하나는 장로교회 정치제도를 발전시킨 것이며, 직제는 그의 목회 현장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II장에서 칼빈의 교직제도를 살펴보았는데 칼빈은 말씀을 선포하며 성례를 바르게 지키는 것을 교회의 표지로 삼았다. 그는 교회 안에서의 사역의 직무를 신약 성서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유형에서 모델을 찾았다. 그는 교회 직분을 4가지 형태 - 목사, 교사, 장로, 집사-로 규정하였다. 그는 초대 교회를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않았으나 네 가지 직분은 신약 성경에 근거를 둔 것이다. 목사는 말씀을 전파하며,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매우 중요한 임무들을 모두 겸하였다고 말한다. 칼빈은 말씀의 수종자로서 목사를 교회 직분의 중심으로 보고 있다.

칼빈에 의하면 교회에서의 교사 직분도 하나님이 임명하셨고, 하나님은 복음 전도가 만연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에 이 보물을 맡겼으며, 그 임무를 목사와 교사에게 임명하여 그들의 입을 통해 자기의 백성을 가르치게 했다고 말한다. 칼빈이 말하는 교사는 제자훈련이나 성례 집행이나 경고와 권면을 하는 일을 맡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며 신자들 사이에 건전하고 순수한 교리를 유지하려는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은 장로에 대해서 다스리는 자들은 신자들 사이에서 선택된 장로들이었으며 감독들과 함께 도덕적인 견책과 권징을 시행하는 일을 맡았다고 말한다. 교회가 베푸는 사랑의 사역, 즉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돌보는 직책을 집사들에게 맡겼다고 보았다. 칼빈은 교회의 일치를 누구보다도 강조한 개혁자이다. 교권이나 직제의 일치가 아니라 성령과 말씀의 빛 아래서 사도직의 수행에 있어서의 일치를 강조하였다. 그는 네 가지 직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직, 선지자직, 및 병 고치는 은사 등과 같은 임시직도 인정한다. 교회 안에서의 사역의 직무는 전성도가 맡은 바 사도직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돕는 직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칼빈은 직분을 유기적으로 이해했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서로가 견제를 받으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Ⅲ장에서 칼빈의 장로교 전통을 이어 받은 한국장로교회의 직분은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교회 직원으로 향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향존직에는 장로, 집사, 권사로, “장로”를 “설교와 치리를 겸하는 자를 목사”라 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로 나누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교회를 다스리는 일이 목사가 지켜야 할 교회의 최대의 향존 직무요,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며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일은 장로가 수행해야 할 교회의 향존 직무이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은 집사가 봉사해야 할 교회의 향존 직무요,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는 일은 권사가 해야 할 교회의 향존 직무이었다.

임시직에 전도사와 서리집사를 두고 있었다. 임시직은 향존 직원을 돕는 직무이다. 그러나 임시 직원의 직무도 교회 향존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봉사하는 일은 같다. 향존직은 모두 종신직이지만 임시직은 비종신직으로 임기가 있다는 점이 향존직과 달랐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상황은 임시직도 향존직처럼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장로교회의 초창기부터 제기해온 여성 직제의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여성도 당당히 교회의 일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목사의 길을 걷기 위해 훈련하는 목사 후보생은 온전한 직분으로 자리를 잡지 않고 있으나 당회와 노회가 관리하면서 그들의 신령상을 살피고 있었다. 또한 초기 한국장로교회에 있었던 조사와 영수직, 강도사, 전도인 등의 직제는 시대적 흐름과 상황에 따라 사라졌지만, 헌법에는 직분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전도인이란 명칭이 한국장로교회(통합)의 주소록에는 사용되고 있었다.

IV장에서는 칼빈의 직제가 한국 장로교회에 적용된 직제는 사중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직책인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을 집행하는 목사 직무이다. 그러나 목사를 장로직에서 나온 것처럼 되어 있었다. 같은 말씀의 사역자인 교사는 목사 직무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각 노회에서 학원에 파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장로 직무는 백성들로부터 선출된 자들로서 목사들과 함께 치리를 맡은 자들이었다. 칼빈은 집사를 둘로 나누었는데 한국장로교회는 집사와 권사로 나누었다. 선택방법과 임직은 같지만 남·여의 구분을 두고 있었다.

다음은 한국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직제로서 교회는 향존 직무인 목사, 장로, 집사가 없어도 그 향존 직무는 외면할 수 없어서 임시직을 두고 있는데 목사의 직무를 돕는 전도사가 있으며, 집사의 직무를 돕는 서리 집사가 있었다. 그러나 목사, 집사의 직무를 돕는 임시직은 있는데 한국교회 초기에 있었던 장로 직무를 도왔던 영수직은 폐지되고 말았다. 한국장로교회의 초기부터 있어왔던 전도인의 직분이 교단이 깨지면서 제각기 교단의

헌법들을 가지게 되면서 이 직분을 삭제했다. 한국장로교회(통합)은 1971년에 이 직분을 삭제하고 말았다. 그러나 전도인이란 전도사와 방불한 임시직원의 일종이다. 이 직분이 헌법에는 삭제하고 없으나 총회 주소록에서는 전도인을 담임교역자란²²⁸⁾에 사용하고 있었다.

B. 제언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의 교역과 직제들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능케 하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교회의 교직은 이것을 위해 있는 것이다. 칼빈에게 4중직은 ‘만인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평등한 신분을 가진다. 한국 장로교회는 만인제사장설에 의하여 모든 교인이 예배에서 평등함을 강조한다. 한국장로교회의 헌법에는 용어상 혼란을 줄 수 있다. 장로교회라는 단어가 마치 장로가 교회의 주인인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이것은 장로가 교인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자라는 대의제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교회 정치적으로 사실상 교회를 대표하는 자는 목사이다. 하지만 한국장로교회의 대표는 목사도, 장로도 교인도 아닌 주님이시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진정한 대표자이시다. 이러한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장로교회의 헌법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의 다변화를 통한 교회 조직의 변화에 맞추어 수용되어야 할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각종 갈등을 낳고 있다. 지금 한국장로교회는 직분자들간의 갈

228)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회주소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39쪽.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리고 그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서로가 교권을 얻기 위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교회 내에서의 횡포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현행 향존직 제도가 70세까지의 종신직을 취하다 보니 결국 개교회 내에 교권주의를 부추기는 결과가 되었다. 그러므로 일정한 기간동안 시무하고 재신임을 묻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한국장로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할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여되시는 모든 직분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한다. 교회로부터 직분을 임명받은 자는 그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무시하거나 소홀히 취급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직분 맡은 자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주님 것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교회의 직분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리스도의 사역에 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분간의 구별은 있을지라도 차이는 없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기 위한 직분이다.

향존직은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할 직원의 준말인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는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할 직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모두 안수 임직하는 종신직이 되게 하였다. 또한 임시직은 교회 사정에 따라서 세우는 직분이다. 임시직은 어디까지나 향존 직원을 보조하는 직무일 따름인데 오늘날 한국장로교회는 임시직도 종신직처럼 되었다. 향존직과 종신직은 구분되어야 할 개념이다. 교회의 직분자는 반드시 교회에 유익을 주어야 한다. 모든 일을 먼저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처리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도 교회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직분이란 명예로 주어지는 감투가 아니라 일을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한국장로회 헌법에 제직회를 구성하는 회원을 시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직분이 서로 협력하여 더욱 효과적인 봉사의 직무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교인이든 모두가 교회에서는 주님 아래 있는 종이요 백성에 지나지 않는다. 그 누구도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성서는 주의 종들을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모든 원리를 가르쳐 주셨다. 누구든지 성서를 떠난 가르침이나 다스림을 수행할 수 없다. 성서 아래 교회가 있고, 성서 아래 직분자들이 있다.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 아래 교회와 교회의 운영원리가 있는 것이다. 교회는 성서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를 조직하고 운영해야 한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머리가 되실 뿐 아니라 또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성례가 집행되어야 하며 교육과 훈련이 수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2 Vols., tr. by Ford Lewis Battle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LCC. XX-XX I.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IV. 김종흡 외 3인 공역. 『基督教綱要』下.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大韓 예수教長老會 憲法』.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34.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7.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2. 2차 자료

국내서적

김명용. 『열린 신학 바른 교회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2.

金鍾大. 『教會政治』.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부, 1984.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회주소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80주년기념집』.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2.

박근원. 『교회와 선교』. 서울: 종로서적, 1988.

- 박기원. 『장로직분론』. 서울: 성도출판사, 1977.
- 朴炳珍. 『教會 政治通覽』. 서울: 성광문화사, 1993.
- _____. 『교회 제직교본』. 서울: 성광문화사, 1990.
- 박윤선.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주석: 정치·예배모범』. 서울: 영음사, 1983.
- 손병호. 『教會政治學 原論』. 서울: 양서각, 1984.
- _____. 『왜 장로교회인가?』. 서울: 양서각, 1986.
- 원세호. 『복음적 장로론』. 서울: 국제신학연구소, 1986.
-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1.
- 이중성. 『교회론』Ⅱ.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9.
- _____. 『칼빈』.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 李昌承. 『教會의 歷史와 政治』. 부산: 태화출판사, 1989.
- 이형기. 『교회의 직제와 평신도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1.
- _____. 『역사속의 교회』. 서울: 도서출판 교육목회, 1995.
- _____. 『종교개혁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7.
- _____. 『장로교의 장로직과 직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 임택진. 『제직훈련 가이드』. 서울: 한국문서선교회, 1999.
- _____. 『장로교회 정치해설』. 서울: 기독교사, 1990.
-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_____. 『실천적 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 조영엽. 『교회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 총회교육부. 『장로교회사』. 서울: 총회교육부, 1980.
- 총회헌법개정위원회 신앙고백과 교리분과위원회편. 『21세기 장로교의 신앙
과 신학의 방향』.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 허순길. 『개혁해 가는 교회』.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1991.

번역자료

Avis, Paul D. L. *The Church in the Theology of the Reformers*. 이기문 역. 『종교개혁자들의 교회관』. 서울: 컨콜디아사, 1987.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 by Ford Lewis Battles, 2 Vol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이형기 역. 『기독교강요 요약』.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2.

_____. *John Calvin tractate theological*. 김진수 역. 『존. 칼빈의 神學論文』.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1.

Battles, F. L. *Analysis of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of John Calvin*. 양진, 강명희 역. 『칼빈의 기독교 강요 분석』.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출판국교육부, 1989.

González, Justo L. *The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이형기, 차종순 역. 『基督教思想史』.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출판, 1990.

Jay, Eric G. *The Church*. 주재용 역. 『교회론의 변천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Loetscher, Lefferts A. *A Brief History of the Presbyterians*, 金南植 역. 『世界長老教會史』. 서울: 성광문화사, 1983.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신복윤역. 『교회론』. 서울: 성광문화사, 1989.

Mckim, Donald K. *Reading in Calvin's Theology*. 이종태 역. 『칼빈신학의 이해』.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1.

Niesel, Wilhelm.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김항안 역. 『칼빈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_____. *The Gospel and The Churches, a Comparison of Catholicism, Orthodoxy and Protestantism*. 이종성, 김항안 역. 『

- 비교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 Oden, Thomas C. *Pastoral theology*. 오성춘 역. 『목회신학: 교역의 본질』. 서울: 장로회 총회 출판국, 1987
- Osterhaven, M. Eugene. *The Spirit of the Reformed Tradition*. 최재성. 『개혁주의 전통의 정신』. 서울: 본문과 현장사이, 2000.
- Park, T. H. L. *John Calvin*. 김지찬 역.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 Weber, Otto.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서울: 도서출판 풍만, 1985.
- Wendel, Francois.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9.

논문 및 정기간행물 자료

- 김인수. “여성과 여성안수의 이해에 대한 교회사적 고찰.” 장로회신학대학 다원화 목회연구원 편. 『교역과 여성안수』.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2.
- 김태동. “개혁교회론.” 미간행 고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박근원. “칼빈의 교회론.” 한국신학대학 출판부 편. 『칼빈 神學의 現代的 理解』. 서울: 한국신학대학, 1978.
- 윤여생. “한국장로교회 장로직제 개선에 관한 연구.” 미간행 한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임희국. “교회 여성들의 자의식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사미자박사회 갑기념출판위원회 편, 『현대교회와 교육』.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1.
- 이양호. “칼빈의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교회론.” 미간행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이연옥.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여성안수: 헌의에서 법제화까지』. 서울: 여전도전국연합회, 1995.

이오갑. “교회론.” 한국칼빈신학회 편. 『칼빈 신학과 목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정성환. “개혁주의 직분론.” 미간행 총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황정욱. “교회론.” 한국칼빈신학회 편, 『칼빈 신학 해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성경주석

Calvin, John. 『구약성경주석』.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3.

_____. 『신약성경주석』.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3.